

2009년 복지정책평가 컨설팅 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김승권 · 김태완 · 박세경 · 신현웅 · 윤상용 · 이윤경

K O R E A
I N S T I T U T E
F O R H E A L T H
A N D S O C I A L
A F F A I R S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머리말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등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어 왔으며, 많은 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민·관 복지협력기구의 구성, 지역복지계획수립의 의무화 등이 추진되었다. 아울러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적 개편과 복지분야의 통합전산망 구축도 중앙과 지방의 연계 강화와 함께 추진되고 있다.

그렇지만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정책을 능동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기획 및 추진 역량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역특성을 최대수준에서 고려한 복지정책의 추진에 장애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복지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증대시키는 복지서비스 분야의 많은 업무가 지방이양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지자체의 재정한계로 서비스 확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성과에 초점을 둔 사업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업무에 대한 평가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2009년부터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복지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즉, 2006~2008년 기간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복지정책을 직접 평가하였다. 2009년도에는 정부의 평가 업무 조정으로 행정안전부의 시도 합동평가에 통합되어 실시되었다.

이번 연구는 행정안전부의 16개 시도 합동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2006~2008년

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컨설팅 보고서는 복지정책의 사후평가에 머물지 않고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해 복지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하기 위함이다. 특히, 컨설팅 필요 지자체의 평가결과 심층 분석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졌음은 평가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당 원의 김승권 선임연구위원의 책임으로 연구진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컨설팅 대상 지자체에 대한 현장 간담회에 참여한 사회복지계의 학자,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의 복지담당 공무원들에게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연구보조원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윤수경 선생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가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발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2010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요 약	1
제1장 일반현황	7
제1절 인구특성	7
1. 인구 및 가구현황	7
2. 인구구조	8
제2절 복지조직 및 시설	10
1. 복지조직	10
2. 복지시설	11
제2장 2009년 복지정책평가 분석결과	15
제1절 전체 및 영역별 점수	15
제2절 각 영역의 지표 점수	16
제3절 영역별 세부지표 평가 점수 및 통계	17
1. 복지총괄	17
2. 노인복지	23
3. 아동·청소년복지	26
4. 보육	31
5. 장애인복지	34
6. 지역사회서비스	41
7. 기초생활보장	46
8. 자활	50
9. 의료급여	53

제3장 복지정책 발전방안	59
제1절 전반적 방향	59
제2절 복지영역별 방안	60
1. 복지총괄	60
2. 노인복지	62
3. 아동·청소년	63
4. 보육	65
5. 장애인복지	66
6. 지역사회서비스	67
7. 기초생활보장	69
8. 자활	70
9. 의료급여	71
 부 록	 75

표 목차

〈표 1- 1〉 인구현황	7
〈표 1- 2〉 가구현황	8
〈표 1- 3〉 연령별 인구	8
〈표 1- 4〉 부양비 및 노년화지수	9
〈표 1- 5〉 대상별 인구	10
〈표 1- 6〉 복지시설현황	11
〈표 1- 7〉 복지시설 구분	12
〈표 2- 1〉 전국, 해당그룹, 동대문구 영역별 점수	16
〈표 2- 2〉 각 영역의 전국 평균 및 동대문구 점수	17
〈표 2- 3〉 복지총괄의 전국 평균 및 동대문구 점수	18
〈표 2- 4〉 인구 10,000명당 민간복지 종사자수	18
〈표 2- 5〉 사회복지기관 행정정보 연계시스템 사용률	19
〈표 2- 6〉 전체 재정 대비 사회복지재정 비율	20
〈표 2- 7〉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 이용시설 설치면적	20
〈표 2- 8〉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이행의 적절성	21
〈표 2- 9〉 지역복지 특화사업 및 민관협력사업 건수	22
〈표 2-10〉 등록자원봉사자당 평균 봉사활동 시간	23
〈표 2-11〉 노인복지의 전국 평균 및 동대문구 점수	24
〈표 2-12〉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서비스 제공률	24
〈표 2-13〉 노인일자리 제공률	25
〈표 2-14〉 노인요양시설 확충률	26
〈표 2-15〉 아동·청소년복지의 전국 평균 및 동대문구 점수	27
〈표 2-16〉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27

〈표 2-17〉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28
〈표 2-18〉	청소년수련시설 가동률	29
〈표 2-19〉	지역사회아동 방과후 보호 비율	29
〈표 2-20〉	아동발달 지원계좌(CDA) 저축률	30
〈표 2-21〉	요보호아동 관내보호 비율 및 타 지역 발생 보호아동 비율	31
〈표 2-22〉	보육의 전국 평균 및 동대문구 점수	32
〈표 2-23〉	보육수요 충족률	32
〈표 2-24〉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수	33
〈표 2-25〉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33
〈표 2-26〉	취약보육 실시율	34
〈표 2-27〉	장애인복지의 전국 평균 및 동대문구 점수	35
〈표 2-28〉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율	36
〈표 2-29〉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	36
〈표 2-30〉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37
〈표 2-31〉	『장애인차별금지법』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37
〈표 2-3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건수	38
〈표 2-33〉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	39
〈표 2-34〉	우선구매 비율 준수율	39
〈표 2-35〉	우선구매대상 품목구매 비율	40
〈표 2-36〉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구매 비율	40
〈표 2-37〉	우선구매 비율 충족품목 비율	41
〈표 2-38〉	지역사회서비스의 전국 평균 및 동대문구 점수	42
〈표 2-3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맞춤형) 시행률	43
〈표 2-4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참여율(지역맞춤형)	43

〈표 2-4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개발형) 취업자 수	44
〈표 2-42〉	사회서비스사업 활용의 안정률(노인돌보미 제외)	44
〈표 2-43〉	사회서비스사업 이용률	45
〈표 2-44〉	사회서비스 예산 대비 집행률	46
〈표 2-45〉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액 실적	46
〈표 2-46〉	기초생활보장의 전국 평균 및 동대문구 점수	47
〈표 2-47〉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관리 수급가구수	48
〈표 2-48〉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 참여실적	48
〈표 2-49〉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49
〈표 2-50〉	급여조정 실적	49
〈표 2-51〉	긴급지원 활성화 시행실적	50
〈표 2-52〉	자활영역의 전국 평균 및 동대문구 점수	51
〈표 2-53〉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율	51
〈표 2-54〉	수급자의 취업·창업률	52
〈표 2-55〉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52
〈표 2-56〉	의료급여 자격 처리의 신속도	53
〈표 2-57〉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입·내원일수 증가율	54
〈표 2-58〉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	54
〈표 2-59〉	사례관리 대상자 급여일수 증가율	55
〈표 2-60〉	의료급여 관리자 채용률	56

그림 목차

[그림 1-1]	동대문구 복지관련 조직 현황	11
----------	-----------------	----

요약

제1장 일반현황

□ 인구특성

- 동대문구의 2008년 말 인구수는 380,897명(외국인 포함)이며, 성별 구성비는 남성 49.12%, 여성 50.88%임.
 - － 가구수는 156,504가구, 평균가구원수는 2.43명임.
- 인구구조는 생산가능인구가 전체의 75.50%, 유년인구는 13.96%, 노년인구는 10.54%로 나타남.
 - － 유년부양비는 18.49%, 노년부양비는 13.96%로 총부양비는 32.45%이며, 노년화지수는 75.49%임.
- 기초생활수급자는 8,335명, 등록장애인은 15,217명, 다문화가족은 1,148가구임.

□ 복지조직 및 시설

- 동대문구의 복지업무는 주민생활국 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고용창출추진단, 복지시설건설추진단에서 담당하고 있음.
 - －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기획, 복지연계, 통합조사, 통합관리, 자원봉사 담당으로 나뉘어있음.
 - － 사회복지과는 생활보장, 장애인복지, 주거복지로 나뉘어있음.
 - － 가정복지과는 보육지원, 여성정책, 아동·청소년, 저출산대책, 다문화지원 담

당으로 나뉘어져 있음.

- 노인복지과는 노인복지, 노인생활지원 담당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노인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고용창출추진단은 취업정보와 일자리창출 담당으로 나뉘어져 있음
- 복지시설건립 추진단은 2개의 팀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장애인, 저소득주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 확충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

○ 복지시설은 총 11개소로 생활시설은 5개소, 이용시설은 6개소임.

제2장 2009년 복지정책평가 분석결과

□ 전체 및 영역별 점수

- 동대문구의 복지정책 전체 평가점수는 2,977점 만점에 1,724.46점으로 100점 환산시 57.93점임.
 - 전체 평가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면, 전국 평균 67.73점보다 9.80점 낮음.
 - 전국 최고점수 78.68점보다 20.75점 낮음.
 - 전체 평가 점수를 100점 환산시 해당그룹 평균 61.95점 보다 7.34점 낮음.
 - 해당그룹 최고점수 68.44점보다 12.76점 낮으며, 해당그룹에서 하위권임.

□ 동대문구의 영역별 점수를 전국 평균과 해당그룹 평균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전국 평균과 영역별 점수를 비교하면 「의료급여」는 높으며, 그 외의 영역은 모두 낮게 나타남.
- 해당그룹 평균과 각 영역별 점수를 비교하면 전국 평균과 마찬가지로 「의료급여」영역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영역은 모두 낮게 나타남

□ 각 영역의 지표 점수

- 복지총괄 영역의 경우, 「지자체 사회복지 기반확충도」는 전국 평균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
- 노인복지 영역은 「독거노인 생활관리 파견사업의 성과」, 「노인 일자리 사업의

- 성과, 「장기요양시설 확충도」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아동·청소년 영역은 「아동·청소년 보호 및 활동기반의 적절성」과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활용도」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보육 영역인 「보육서비스 확대 실적」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장애인복지 영역은 「장애인복지 서비스 기반 확충도」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사업 성과」,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혜율」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의 경우,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사회서비스사업 활용도」, 「사회서비스 업무추진의 적절성」은 전국 평균보다 낮음.
 - 기초생활보장 영역의 「기초생활보장 업무기반 확충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활영역의 「자활사업 활성화 정도」는 전국 평균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의료급여 영역의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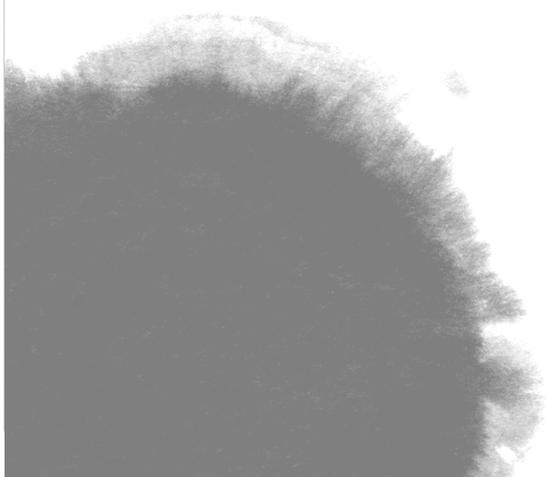
제3장 복지정책 발전방안

- 전반적으로 동대문구는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환경의 많은 제한점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복지부서 직원의 지역사회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열정이 매우 큼.
 - 그렇지만 복지재정의 확충과 시설인프라 구축은 다소 기간이 소요되므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평가 기준연도의 차이로 인하여 많은 점이 개선되었으나 자료가 충분치 않아 이미 확충 또는 개선된 점이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발전방안에 완벽히 반영되지는 않은 한계를 가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제시하는 발전방안은 향후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동대문구의 복지정책 평가점수가 낮은 영역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 영역의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복지정책 평가점수가 낮은 영역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 영역의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노인복지」, 「아동·청소년」, 「보육」,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자활」 영역은 전국 평균 및 해당그룹 평균과 큰 차이로 낮아 많은 노력이 필요함.
 -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보임.
 - 노인복지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의 성과」, 「장기요양시설 확충도」가 특히 낮아 대책이 요구됨.
 - 장애인복지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서비스는 「사회서비스사업 활용도」가 특히 낮으므로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음.

01

일반현황



제1장 일반현황

제1절 인구특성

1. 인구 및 가구현황

- 동대문구의 2008년 말 인구수는 380,897명(외국인 포함)으로 전국 인구의 0.78%, 서울시 인구의 3.80%를 차지함.
 - 성별 구성비는 남성 49.12%, 여성 50.88%로 여성이 다소 많음.
 - 외국인은 9,805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의 2.57%이었으며, 전국 외국인의 4.13%, 서울시 외국인의 17.02%를 차지함.

〈표 1-1〉 인구현황

(단위: 명)

구분	성별			국적 ³⁾		
	계	남	여	계	한국인	외국인
전국 ¹⁾	48,606,787	24,415,883	24,190,904	47,278,951	47,041,434	237,517
서울시 ¹⁾	10,031,719	4,985,327	5,046,392	9,820,171	9,762,546	57,625
동대문구 ²⁾	380,897	187,089	184,003	380,897	371,092	9,805

자료: 1) 통계청, 「장래추계인구」, 2008; 2) 동대문구 내부자료, 2009; 3)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

- 동대문구의 총 가구수는 156,504가구로 전국 가구의 0.94%, 서울시 가구의 4.50% 수준임.
 - 동대문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2.43명으로 전국의 평균 가구원수(2.92명)와 서울시 평균 가구원수(2.88명)보다 다소 적음.

〈표 1-2〉 가구현황

(단위: 세대, 명)			
구분	총 인구수	가구수	평균 가구원수
전국 ¹⁾	48,606,787	16,673,162	2.92
서울시 ¹⁾	10,031,719	3,477,815	2.88
동대문구 ²⁾	380,897	156,504	2.43

주: 평균 가구원수=총 인구수/가구수.

자료: 1) 통계청, 「장래추계인구」, 2008; 2) 동대문구 내부자료, 2009.

2. 인구구조

□ 동대문구의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유년인구(0~14세), 노년인구(65세 이상)로 나타남.

○ 연령별 인구구성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산가능인구가 전체의 75.50%이며, 유년인구는 13.96%, 노년인구는 10.54%로 나타남.

— 이를 전국의 연령별 인구구성비와 비교하면, 동대문구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3.22%pt, 노년인구 비율은 0.22%pt 높게 나타난 반면 유년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3.44%pt 낮음.

— 서울시의 연령별 인구구성비와 비교하면, 동대문구는 서울시 평균보다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0.73%pt, 유년인구 비율은 1.27%pt 낮고 노년인구는 2.00%pt 높음.

〈표 1-3〉 연령별 인구

(단위: 명)				
구분	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전국 ¹⁾	48,606,787	8,458,098	35,132,663	5,016,026
서울시 ¹⁾	10,031,719	1,527,591	7,647,457	856,671
동대문구 ²⁾	371,092	51,811	280,167	39,114

자료: 1) 통계청, 「연령별 장래추계인구」, 2008; 2) 동대문구 내부자료, 2009.

- 동대문구의 총부양비는 전국 평균(38.35%)보다 낮은 32.45%이며, 이는 서울시 평균(31.18%)보다는 1.27%pt 높음.
 - 유년부양비는 18.49%로 전국 평균(24.07%)보다 5.58%pt, 서울시 평균(19.98%)보다 1.49%pt 낮음.
 - 노년부양비는 13.96%로 전국 평균 14.28%보다 0.32%pt 낮고, 서울시 평균 11.20%보다는 2.76%pt 높음.

- 노년화지수는 75.49%로 전국 평균(59.30%)보다 16.91%pt, 서울시 평균(56.08%)보다 19.41%pt 높음.
 - 이는 동대문구가 서울시 내 타 지역보다 노인부양부담이 자녀부양부담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표 1-4〉 부양비 및 노년화지수

(단위: 명)

구분	부양비			노년화지수
	유년부양비	노년부양비	총부양비	
전국 ¹⁾	24.07	14.28	38.35	59.30
서울시 ¹⁾	19.98	11.20	31.18	56.08
동대문구 ²⁾	18.49	13.96	32.45	75.49

주: 유년부양비=유년층(0~14세 인구)/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100
 노인부양비=노년층(65세 이상 인구)/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100
 노년화지수=노년층(65세 이상 인구)/유년층(0~14세 인구)×100
 자료: 1) 통계청, 『연령별 장래추계인구』, 2008; 2) 동대문구 내부자료, 2009.

- 동대문구의 기초생활수급자는 8,335명, 등록장애인은 15,217명, 다문화가족은 1,148가구임.
 - 동대문구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전국 기초생활수급자의 0.54%,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의 4.04%를 차지함.
 - 등록장애인은 전국 등록장애인의 0.72%, 서울시 등록장애인의 4.39%를 차지함.
 - 다문화가족 수는 2009년을 기준으로 전국 다문화가족 수의 0.87%, 서울시 다문화가족 수의 4.09%를 차지함.

〈표 1-5〉 대상별 인구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수	다문화가족 수
전국 ¹⁾	1,529,939	2,104,889	131,702
서울시 ¹⁾	206,133	346,275	28,093
동대문구 ²⁾	8,335	15,217	1,148

(단위: 명, 가구)

자료: 1)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2008;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2007;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2) 동대문구 내부자료,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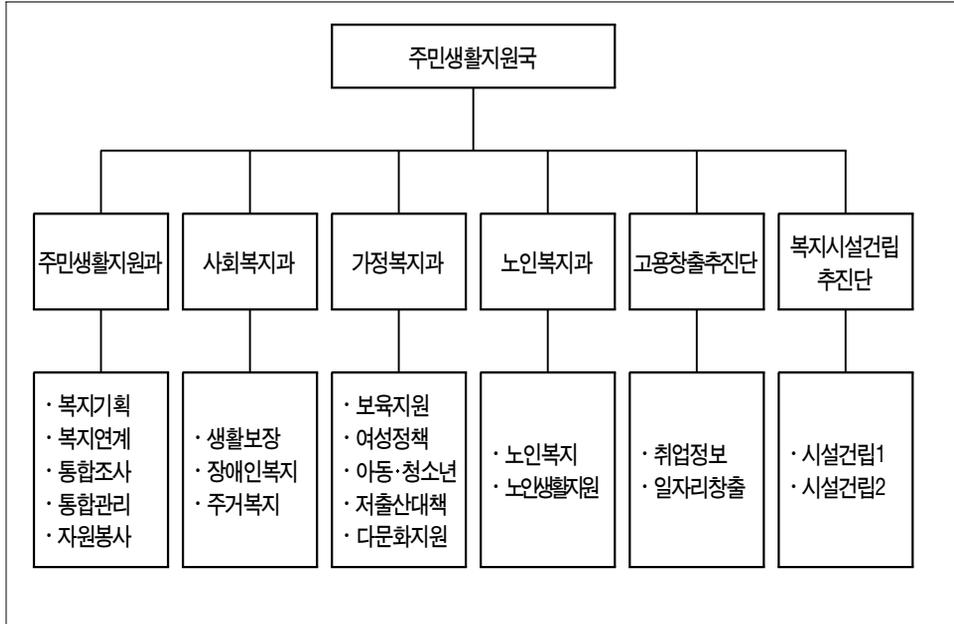
제2절 복지조직 및 시설

1. 복지조직

- 동대문구의 복지업무는 주민생활국 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고용창출추진단, 복지시설건설추진단에서 담당하고 있음.
 -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기획, 복지연계, 통합조사, 통합관리, 자원봉사 담당으로 나뉘어있음.
 - － 저소득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복지대상자 후원, 결연, 복지기관과의 연계, 긴급복지지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재해구호, 자원봉사 등의 사비를 제공하고 있음.
 - 사회복지과는 생활보장, 장애인복지, 주거복지로 나뉘어있음.
 - － 저소득 주민 보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 수립, 저소득주민을 위한 주택지원, 실업자 알선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가정복지과는 보육지원, 여성정책, 아동·청소년, 저출산대책, 다문화지원 담당으로 나뉘어져 있음.
 - － 영유아 보육, 아동·청소년업무, 출산 장려, 다문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
 - 노인복지과는 노인복지, 노인생활지원 담당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노인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고용창출추진단은 취업정보와 일자리창출 담당으로 나뉘어져 있음.
 - － 구민의 일자리 창출, 취업정보은행 운영, 구직활동 및 공공근로와 자활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함.

- 복지시설건립 추진단은 2개의 팀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장애인, 저소득주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 확충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

[그림 1-1] 동대문구 복지관련 조직 현황



자료: 동대문구 내부자료, 2010.

2. 복지시설

□ 동대문구의 사회복지시설은 총 11개소로 생활시설은 5개소, 이용시설은 6개소임

- 생활시설 95.76은 87.36%로 이용자수 대비 정원수가 약간 많음.

<표 1-6> 복지시설현황

구분	(단위: 개소, 명)		
	시설수	정원수	이용자수
생활시설	5	118	113
이용시설	6	194	194

자료: 동대문구 내부자료, 2010.

□ 복지시설별 시설수는 다음과 같음.

- 종합사회복지기관은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가 있으며, 제철일안식일 예수재림 교 한국연합회유지재단과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됨.
- 노인복지시설은 요양원 1개소, 공동생활시설 1개소, 주간보호센터 10개소, 노인복지관 1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상담소 1개소, 지역아동센터 6개소, 공동생활가정 4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보육시설은 민간 구립 등으로 총 213개소로 국공립 22개소, 개인 96개소, 단체 4개소, 직장 4개소, 가정 87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2개소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개소, 공동생활시설 1개소가 있음.
- 저소득층복지시설은 노숙인 시설 1개소가 있음.
- 기타 자원봉사센터 1개소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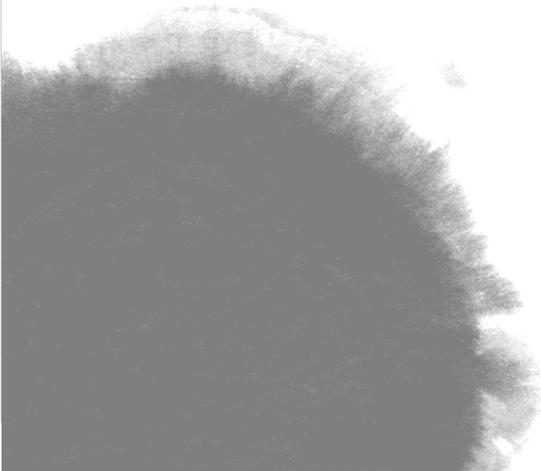
〈표 1-7〉 복지시설 구분

(단위: 개소, 명)

구분	시설수	정원수	이용자수	시설구분
종합사회복지기관	2	-	1,785	종합사회복지관(2),
노인복지시설	15	499	488	요양원(1), 공동생활시설(1), 주간보호센터(10) 노인복지관(1)
아동복지시설	11	312	307	아동상담소(1), 지역아동센터(6), 공동생활가정(4)
보육시설	213	8,882	7,508	국공립(22), 개인(96), 단체(4), 직장(4), 가정(87),
장애인복지시설	2	36	3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1), 공동생활시설(1)
저소득층복지시설	1	180	180	노숙인 시설(1)
기타	1	-	3,197	자원봉사센터(1:시군구 자원봉사센터)

자료: 동대문구 내부자료, 2010.

2009년 복지정책평가 분석결과



제2장 2009년 복지정책평가 분석결과

제1절 전체 및 영역별 점수

- 동대문구의 복지정책 전체 평가점수는 2,977점 만점에 1,724.46점으로 100점 환산시 57.93점임.
 - 전체 평가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면, 전국 평균 67.73점보다 9.80점 낮음.
 - 전국 최고점수 78.68점보다 20.75점 낮음.
 - 전체 평가 점수를 100점 환산시 해당그룹 평균 61.95점 보다 7.34점 낮음.
 - 해당그룹 최고점수 68.44점보다 12.76점 낮으며, 해당그룹에서 하위권임.

- 동대문구의 영역별 점수를 전국 평균과 해당그룹 평균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전국 평균과 영역별 점수를 비교하면 「의료급여」는 높으며, 그 외의 영역은 모두 낮게 나타남.
 - 해당그룹 평균과 각 영역별 점수를 비교하면 전국 평균과 마찬가지로 「의료급여」영역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영역은 모두 낮게 나타남.

〈표 2-1〉 전국, 해당그룹, 동대문구 영역별 점수

(단위: 점)

영역(만점)	전국			해당그룹			동대문구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최저	
복지총괄(246점)	226.32	176.92	132.84	209.10	176.86	150.06	159.90
노인복지(406점)	406.00	284.13	162.40	366.10	248.96	202.00	204.70
아동·청소년(359점)	281.15	211.95	152.90	275.96	210.21	171.50	187.46
보육(211점)	198.34	138.72	90.73	185.68	134.71	97.06	103.39
장애인(545점)	460.54	355.10	227.06	378.28	317.42	254.40	279.06
지역사회서비스(380점)	344.11	247.05	161.92	309.78	246.25	170.60	202.52
기초생활보장(563점)	505.04	413.18	334.49	496.76	425.97	377.54	410.66
자활(122점)	122.00	87.00	48.80	109.80	80.33	54.90	62.22
의료급여(145점)	131.95	102.23	71.05	126.15	102.34	79.75	114.55
계(2977점 만점)	2342.27	2016.29	1724.46	2104.18	1943.04	1724.46	1724.46

주: 영역별 가중치가 부여된 점수이며, 평가점수 총점은 2,977점임.

제2절 각 영역의 지표 점수

□ 동대문구의 각 영역별 지표 점수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복지총괄 영역의 경우, 「지자체 사회복지 기반확충도」는 전국 평균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
- 노인복지 영역은 「독거노인 생활관리 파견사업의 성과」, 「노인 일자리 사업의 성과」, 「장기요양시설 확충도」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아동·청소년 영역은 「아동·청소년 보호 및 활동기반의 적절성」과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활용도」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보육 영역인 「보육서비스 확대 실적」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장애인복지 영역은 「장애인복지 서비스 기반 확충도」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사업 성과」,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혜율」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의 경우,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사회서비스사업 활용도」, 「사회서비스 업무추진의 적절성」은 전국 평균보다 낮음.
- 기초생활보장 영역의 「기초생활보장 업무기반 확충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활영역의 「자활사업 활성화 정도」는 전국 평균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의료급여 영역의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 각 영역의 전국 평균 및 동대문구 점수

(단위: 점)

영역	지표명	만점	전국 평균	동대문구
복지총괄	지자체 사회복지 기반확충도	100	71.92	65
노인복지	독거노인 생활관리 과건사업의 성과	100	64.31	40
	노인 일자리 사업의 성과	100	76.98	70
	장기요양시설 확충도	100	68.19	40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보호 및 활동기반의 적절성	100	64.66	58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활용도	100	53.00	46
보육	보육서비스 확대 실적	100	65.75	49
장애인	장애인복지 서비스 기반 확충도	100	56.32	46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혜율	100	71.62	40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사업 성과	100	66.96	60
지역사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100	62.41	64
	사회서비스사업 활용도	100	61.56	40
	사회서비스 업무추진의 적절성	100	71.24	55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업무기반 확충도	100	79.64	70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100	67.49	76
자활	자활사업 활성화 정도	100	71.31	51
의료급여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100	70.50	79

제3절 영역별 세부지표 평가 점수 및 통계

1. 복지총괄

- 동대문구의 「지자체 사회복지기반 확충도」 점수는 65점으로 전국 평균 71.92점보다 6.92점 낮음.
 - ‘전체 재정 대비 사회복지재정 비율’, ‘지역복지 특화사업 및 민관협력사업 건수’의 점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음.
 - ‘인구 10,000명당 민간복지 종사자수’, ‘사회복지기관 행정정보 연계시스템 사용률’,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이용시설 설치면적’,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이행의 적절성’, ‘등록자원봉사자당 평균 봉사활동 시간’의 점수는 전국 평균보다 낮음.

〈표 2-3〉 복지총괄의 전국 평균 및 동대문구 점수

(단위: 점)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만점	전국 평균	동대문구
지자체 사회복지 기반 확충도	인구 10,000명당 민간복지 종사자수	15	14.68	13
	사회복지기관 행정정보 연계시스템 사용률	10	7.17	4
	전체 재정 대비 사회복지재정 비율	20	12.95	14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이용시설 설치면적	10	6.21	6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이행의 적절성	10	6.21	5
	지역복지 특화사업 및 민관협력사업 건수	20	13.78	14
	등록지원봉사자당 평균 봉사활동 시간	15	10.92	9
	계	100	71.92	65

가. 지자체 사회복지 기반 확충도

- 동대문구의 인구 10,000명당 민간복지 종사자 수는 9.4명으로 전국 평균(24명), 대도시 평균(18명) 및 해당그룹 평균(16명)의 평균보다 적음.
 - 전반적으로 민간복지 종사자 수가 적음.
 - 이용시설종사자수는 216명으로 전국 평균(178명)보다 많으나, 대도시 평균(257명) 및 해당그룹 평균(253명)보다는 적음.
 - 생활시설 종사자수는 135명으로 전국 평균(205명), 대도시 평균(218명), 해당그룹 평균(236명)보다 적음.
 - 기타 종사자수는 없으며, 전국 평균(11명), 대도시 평균(17명), 해당그룹 평균(13명)과 비교됨.

〈표 2-4〉 인구 10,000명당 민간복지 종사자수

(단위: 명)

지역	전체인구수	이용시설종사자수	생활시설종사자수	기타종사자수	인구 10,000명당 민간복지 종사자수
전국	213,536.06	178.37	205.28	10.50	23.90
대도시	310,362.54	256.53	217.58	16.53	18.36
해당그룹	346,294.11	253.32	236.00	12.95	15.89
동대문구	370,250.00	216.00	135.00	0.00	9.48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대도시는 74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인구 10,000명당 민간복지 종사자수: (민간복지 종사자수/인구수)×10,000
 - 민간복지종사자: 시설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복지관련 단체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포함(단, 비인가, 임의단체는 제외. 반드시 등록된 단체에 한함)
 - 사회복지관련 시설 및 단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명시된 사회복지 이용 및 생활시설에 한함(이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이나 단체는 제외)
 - 민간복지종사자 명단은 각 시설로부터 2008.12월분 급여대장 사본을 받아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하되 급여대상 사본은 2009년도 합동평가단의 시도별 평가일정에 맞추어 각 시도로 제출할 것
 - ※ 단, 급여대장중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제외하고 제출
 - 인구수: 2008년 말 기준의 전체 시·군·구 인구수를 의미함.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파악, 합산하여 기재토록 함.

□ 동대문구의 사회복지기관 행정정보 연계시스템 사용률은 51.52%로 전국 평균 69.57%, 대도시 평균 72.53%, 해당그룹 평균 66.22%보다 현저히 낮음.

○ 전체 사회복지기관 33개소 중 17개소가 새울행정시스템 정보 연계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5〉 사회복지기관 행정정보 연계시스템 사용률

(단위: 개, %)

지역	전체 사회복지 기관수	새울행정시스템 정보 연계시스템 사용 기관수	사회복지기관 행정정보 연계시스템 사용률
전국	51.38	35.31	69.57
대도시	61.15	44.19	72.53
해당그룹	62.16	43.95	66.22
동대문구	33.00	17.00	51.52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대도시는 74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사회복지기관 행정정보연계시스템 사용률: (새울행정시스템 정보연계시스템 사용 사회복지기관수/사회복지기관수)×100
 - 새울행정시스템 정보연계시스템 사용 사회복지기관수: 관내 사회복지기관 중에서 시·군·구 새울행정시스템 정보연계시스템 사용기관 수를 의미함.
 - 사회복지기관 수: 사회복지기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 휴양소를 제외한 사회복지생활 및 이용시설이 포함됨.(단, 조건부 및 미신고 시설은 제외함)
 -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타 지자체에서 운영 및 지원하는 시설은 제외되며, 타 지역에 소재하여도 본청에서 직접 운영 및 지원하는 시설은 포함됨

□ 동대문구의 사회복지재정 비율은 26.46%임.

○ 이는 전국 평균 21.42%보다는 높으나, 대도시 평균 34.28%, 해당그룹 평균 32.90%보다는 낮음.

〈표 2-6〉 전체 재정 대비 사회복지재정 비율

(단위: 천원, %)

지역	지자체 전체 예산	사회복지재정	사회복지재정 비율
전국	342,804,314	70,036,878	21.42
대도시	242,418,077	80,948,811	34.28
해당그룹	274,798,214	89,090,352	32.90
동대문구	296,486,405	78,447,997	26.46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대도시는 74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전체 재정 대비 사회복지재정 비율: (사회보장비/일반회계 총액)×100

- 사회복지장비: 관 2300번 일반회계의 사회복지장비 중심으로 작성
 - ① 당해 연도에 지출원인 행위를 결산 때까지 지출한 경우는 전년도 사업비에 합산
 - ② 지자체 특성상(일반회계) 부문에 시 혹은 구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분묘인(일반회계) 부문에 보조금 등을 포함하고, 사회복지재정(사회보장비)에도 같은 보조금(결산액) 액수를 포함하도록 함(예, 서울시의 보조금)
 - ③ 2008년도에 긴급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에 한함
 - * 일반회계에서 재해복구와 관련된 대규모 비용은 제외
- 시군구 전체 예산: 2008년도 일반회계 결산 기준액(예산 집행액, 지출총액)으로 산정
 - * 특별회계는 제외

□ 동대문구의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 이용시설 설치면적은 60.52^{m²}임.

○ 이는 전국 평균 94.93^{m²}, 대도시 평균 73.65^{m²}, 해당그룹 평균 62.09^{m²}보다 85.8~114.79^{m²} 협소한 것임.

〈표 2-7〉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 이용시설 설치면적

(단위: 명, 개, m²)

지역	인구수	사회복지 이용시설수	이용시설 면적의 합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 이용시설 설치면적
전국	213,536.06	29.63	16,475.04	94.93
대도시	310,362.54	38.55	22,032.88	73.65
해당그룹	346,294.11	38.74	20,132.92	62.09
동대문구	370,250.00	20.00	22,409.00	60.52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대도시는 74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 이용시설 설치면적: (사회복지 이용시설 총 면적/인구수)×1,000

- 사회복지 이용시설 총 면적: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사회복지이용시설(생활시설 제외)에 대한 신고 설치 면적, 시군구 관내 모든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설치 면적의 합
 - 2008년 12말 현재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에 한함.
- 인구수: 2008년 말 기준의 전체 시군구 인구수를 의미함.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파악, 합산하여 기재토록 함.

□ 동대문구의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이행의 적절성은 4점으로 전국 평균 5.22점, 대도시 평균 4.84점 및 해당그룹 평균 4.68점보다 낮음.

○ 이는 동대문구 협의체에 간사가 없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11월 이후에 수립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표 2-8〉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이행의 적절성

(단위: 명, 개, 점)

지역	풀타임 간사수 ¹⁾	파트타임 간사수 ¹⁾	연차별시행계획 수립시기 ¹⁾			지역사회협의체 심의이행여부 ¹⁾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이행의 적절성
			6월 이전	11월 이전	11월 이후		
전국	73	4	23	103	89	207	5.22
대도시	17	0	11	27	31	63	4.84
해당그룹	6	0	4	5	7	14	4.68
동대문구 ²⁾	0	0	-	-	1	1	4.00

주: 1) 전국 232개 지자체, 대도시 74개 지자체, 해당그룹 19개 지자체의 총 합계임; 2) 연차별시행계획 수립시기: 시도지사에게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수립: 1, 미수립: 0); 지역사회협의체 심의이행 여부: 이행(1), 불이행(0); 3)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이행의 적절성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대도시는 74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이행의 적절성: (파트타임 간사수×0.5+풀타임 간사수)×3+지역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기+지역복지협의체 심의이행 여부

* 간사: 협의체 소속의 민간 유급간사만을 의미

- 민간 유급 간사: 지역복지협의체 소속된 민간 신분의 유급 직원
 -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를 풀타임으로 봄
 - 주 20~39시간 근무 기준 급여지는 파트타임으로 봄
 - 주 20시간 이하 근무조건의 민간 간사의 경우에는 유급 간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단, 주 20시간 근무자 2인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풀타임 간사 1인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지역복지계획 연차별시행계획 수립여부
 - 평가대상 연도의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시기를 2008년 6월, 11월말, 11월말 이후 시·도지사에게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 (6월(3점), 11월(2점), 11월 이후(1점))
- 지역복지협의체 심의 이행 여부
 - 연차별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지역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쳤는지를 의미함
 - 심의 이행이란, 시행계획이 내부 결재 과정에서 확정되기 이전에, 최소한 지역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의 1차례 이상 대면회의(서면회의는 해당 안 됨)를 통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되었는지를 의미. 이행(3점), 불이행(0점)

□ 동대문구의 지역복지 특화사업 및 민관협력사업 건수는 7건으로 전국 평균 9.94건, 대도시 평균 11.86건, 해당그룹 평균 13.84건보다 적음.

○ 특화사업 건수는 7.00건으로 분석됨.

— 전국 평균(9.08건), 대도시 평균(10.50건), 해당그룹 평균(13.84건)보다 적음.

○ 민관협력사업 건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전국 평균(0.99건), 대도시 평균(1.77건), 해당그룹 평균(2.74건)과 비교됨.

〈표 2-9〉 지역복지 특화사업 및 민관협력사업 건수

(단위: 건)

지역	특화사업 건수	민관협력사업 건수	지역복지 특화사업 및 민관협력사업 건수
전국	9.08	0.99	9.94
대도시	10.50	1.77	11.86
해당그룹	11.11	2.74	13.84
동대문구	7.00	0.00	7.0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대도시는 74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지역복지 특화사업 및 민관협력사업 건수: 2008년도 특화사업 건수+2008년도 민관협력사업 건수
 〈특화사업기준〉
- 특화사업은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관련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서에서 기획하는 사업을 의미함. 즉, 특수시책, 특수사업, 구상사업, 비전사업 등으로 일컬어지며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주민 복지수준의 향상을 꾀하는 사업을 의미함.
 - 국비 및 시·도의 예산지원 사업은 제외되고, 시·군·구 자체 사업을 의미하며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이 모두 해당됨.
 - 행사성 사업, 일회성 사업 및 사회복지기관, 단체 등의 지원 사업 등은 제외됨.
 - 사회복지기념일(사회복지의 날, 여성의 날, 어린이날, 노인의 날, 장애인의 날 등) 중심의 행사성 사업, 연말 등에 일회성으로 제공하는 상품권, 난방비 지원 등의 사업은 제외함.
 - 관변단체를 지원 또는 후원하는 사업은 제외함.
 - 경성예산사업 중에서 국가유공자 추가수당 등 사회보장성사업은 해당되거나 복지관련 행사지원, 건물임차 사업 등은 포함되지 않음.
- 〈민관협력사업 기준〉
- 민관협력사업이란 시군구가 지역사회내의 복지증진, 인력강화, 민간자원 개발을 위하여 민간 사회복지 시설, 학교, 기업, 법인 등과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 중에서 시군구 자체 예산이 투입된 사업과 비예산 사업을 모두 포함.
 - 민관이 공동으로 사업계획서가 마련되어 있고 단체장의 승인 하에 공식적으로 추진된 사업을 말함.
 - 민간복지기관 범위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시립, 구립)과 단체(협의체, 위원회 등) 등은 제외함.
 - 시군구 사회보장복지부서 공무원과 민간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공동 참여하는 연찬회, 세미나 등은 포함되지 않음.

□ 동대문구의 등록자원봉사자당 평균 봉사활동 시간은 16.72시간임.

○ 전국 평균 46.46시간, 대도시 평균 43.27시간, 해당그룹 평균 37.56시간보다 짧은 것으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2-10〉 등록자원봉사자당 평균 봉사활동 시간

(단위: 명, 시간)

지역	자원봉사활동 등록자수			봉사활동 총시간			등록자원봉사자당 평균 봉사활동 시간
	한국사회복지 협의회 등록자 (VMS)	한국청소년활동 진흥센터 등록자	계	한국사회복지 협의회등록자(VMS)	한국청소년활동 진흥센터등록자	계	
전국	1,144.43	535.67	1,680.10	60,833.59	3,148.34	63,981.93	46.46
대도시	1,833.09	1,267.23	3,100.32	101,584.34	4,562.85	106,147.19	43.27
해당그룹	1,946.53	1,360.05	3,306.58	108,808.84	5,736.79	114,545.63	37.56
동대문구	1,533.00	3,298.00	4,831.00	79,494.00	1,261.00	80,755.00	16.72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대도시는 74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등록자원봉사자당 평균 봉사활동 시간: 등록자원봉사자 총 활동시간/등록자원 봉사자수(VMS+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
 - 등록자원봉사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VMS시스템에 가입된 사회복지 자원봉사자수(VMS)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총합으로 2008년 1년간 총 16시간 이상 봉사활동 유경험자 임
 - 사회복지시설(생활 및 이용시설)에서 자체 등록 및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등록자원봉사자도 포함되지 않음(이중등록)

2. 노인복지

□ 동대문구의 「장기요양시설 확충도」,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의 성과」, 「노인 일자리사업의 성과」 영역에서 낮은 평가결과를 나타냄.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의 성과」의 세부지표인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서비스 제공률’,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과」의 세부지표인 ‘노인일자리 제공률’, 「장기요양시설 확충도」의 세부지표인 ‘노인요양시설 확충률’의 점수는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음.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서비스 제공률’의 점수는 40점(기본점수)으로 전국 평균 64.31점보다 24.31점 낮음.
- ‘노인일자리 제공률’의 점수는 70점으로 전국 평균 76.98점보다 6.98점 낮음.
- ‘노인요양시설 확충률’의 점수는 40점(기본점수)으로 전국 평균 68.19점보다 28.19점 낮음.

〈표 2-11〉 노인복지의 전국 평균 및 동대문구 점수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단위: 점)		
		만점	전국 평균	동대문구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의 성과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서비스 제공률	100	64.31	40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	노인일자리 제공률(공공분야+민간분야)	100	76.98	70
장기요양시설 확충도	노인요양시설 확충률	100	68.19	40

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의 성과

- 동대문구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서비스 제공률은 43%로 전국 평균 74%, 대도시 평균 57%, 해당그룹 평균 57%보다 낮음.
- 이는 서비스 대상자보다 부족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표 2-12〉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서비스 제공률

지역	(단위: 건, 명, %)					
	안전확인 횟수	생활교육 인원	서비스연계인원	보건복지가족부 배정인원	사업대상자 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서비스 제공률
전국	65,275.58	8873.53	9279.85	22.49	494.72	0.74
대도시	51,799.38	5005.23	6930.14	20.00	440.00	0.57
해당그룹	49,785.53	4,210.89	6,535.00	20.16	443.47	0.57
동대문구	74,569.00	2,806.00	6,605.00	24.00	528.00	0.43

주: 1) 통계당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대도시는 74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실적/사업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안전확인 및 생활교육 실시,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활동을 통한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2008년 독거노인생활 관리사의 서비스 제공률을 파악. - 서비스 제공 실적: (안전확인 횟수/1,040회) + {(2×생활교육 인원)/120명} + {2×(서비스연계 인원)/120명} - 사업대상자: 보건복지부 생활관리사+서비스 관리자인원×22명

나.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

- 동대문구의 노인일자리 제공률(공공분야+민간분야)은 2.08%로 전국 평균 3.29%, 대도시 평균 3.34%, 해당그룹 평균 2.97%보다 낮음.
- 공공분야의 제공일자리수는 693건수로 전국 평균(540건수), 대도시 평균(632건수), 해당그룹 평균(672건수)보다 높음.

○ 민간분야의 제공일자리수는 78건으로 전국 평균(86.51건)보다 적음.

〈표 2-13〉 노인일자리 제공률

(단위: 건, 명, %)

지역	제공일자리 수		65세 이상 노인수	노인일자리 제공률 (공공분야+민간분야)
	공공	민간		
전국	540.16	86.51	21,850.31	3.29
대도시	632.38	128.39	27,158.38	3.34
해당그룹	672.37	129.84	30,075.53	2.97
동대문구	693.00	78.00	38,272.00	2.08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대도시는 74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노인일자리 제공률: {노인일자리 제공 수(공공분야+민간분야×1.3)}/65세 이상 인구수}×100

-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를 65세 이상 인구대비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 노인 일자리 제공수의 비율로 파악함.
- 공공분야(공익, 복지, 교육형)의 경우 노인일자리 제공 수는 실 참여기간을 7개월로 환산한 수를 의미
 - 일자리 제공 수는 참여노인의 실제 근무기간의 합을 7개월로 나누어 환산한 일자리수의 개념임(소수 점 발생시 올림 처리)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자체부담으로 일자리를 제공한 실적도 포함.
- 민간분야(시장형, 인력차전형)의 경우 노인일자리 제공수를 지방자체단체가 지원하는 기관 및 노인일자리 박람회 민간영역 일자리 창출실적을 의미함. (계산식에서 가중치 부여×1.3)

다. 장기요양시설 확충도

□ 동대문구의 노인요양시설 확충률은 3.87%로 전국 평균 87.62%, 대도시 평균 53.01%, 해당그룹 평균 44.48%보다 낮음.

○ 시설이용대상이 전국, 대도시, 해당그룹의 평균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요양 시설 총 정원은 오히려 적음.

－ 요양시설 총 정원은 229명으로 전국 평균(295명), 대도시 평균(257명), 해당그룹 평균(286명)보다 적음.

－ 시설이용대상은 5,924명으로 전국 평균(993명), 대도시 평균(450명), 해당그룹 평균(2,466명)보다 많음.

〈표 2-14〉 노인요양시설 확충률

(단위: 명, %)

지역	요양시설 총 정원	시설이용대상	노인요양시설 확충률
전국	295.25	992.50	87.62
대도시	451.99	444.78	106.10
해당그룹	286.47	2,465.63	44.48
동대문구	229.00	5,924.00	3.87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대도시는 74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장기요양시설 확충률: (노인요양시설 총 정원/노인요양시설 이용대상)×100
- 노인요양시설 총 정원: 노인요양시설, 그룹홈, 소규모요양시설로서 장기요양기관 지정기관의 정원
 - 노인요양시설 이용대상: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수×0.016(전국 시설입소 수요를 평균한 값)
 -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노인요양시설
 - 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시설 중 해당 지자체의 운영 및 지원을 받는 경우는 해당 지자체의 소속으로 간주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시설 중 타 지자체의 운영 및 지원을 받는 경우는 타 지자체의 소속으로 간주

3. 아동·청소년복지

- 동대문구의 「아동·청소년보호 및 활동기반의 적절성」은 100점 만점에 58점으로 전국 평균 64.66점보다 6.66점 낮음.
 - ‘청소년수련시설 가동률’,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의 점수는 전국 평균보다 낮음.
 -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의 점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음.
- 동대문구의 「아동·청소년복지 서비스 활용도」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46점으로 전국 평균 53점보다 낮음.
 - ‘아동발달 지원계좌(CDA) 저축률’과 ‘요보호아동 관내보호 비율 및 타 지역 발생 보호아동 비율’의 점수는 전국 평균보다 낮음.
 - ‘지역사회아동 방과후 보호 비율’의 점수는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임.

〈표 2-15〉 아동·청소년복지의 전국 평균 및 동대문구 점수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만점	(단위: 점)	
			전국 평균	동대문구
아동·청소년보호 및 활동기반의 적절성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40	24.84	16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30	21.32	12
	청소년수련시설 가동률	30	18.50	30
	계	100	64.66	58
아동·청소년복지 서비스 활용도	지역사회아동 방과후 보호 비율	40	16.39	16
	아동발달 지원계좌(CDA) 저축률	20	9.72	8
	요보호아동 관내보호 비율 및 타 지역발생 보호아동 비율	40	26.89	22
	계	100	53.00	46

가. 아동·청소년보호 및 활동기반의 적절성

- 동대문구의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은 0.47점으로 전국 평균 4.33점, 대도시 평균 3.17점, 해당그룹 평균 3.31점보다 적음.
 - 동대문구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전국, 대도시, 해당그룹의 평균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속건수는 전국, 대도시, 해당그룹의 평균보다 적음.
 - － 청소년 유해업소수는 2,156개소로 전국 평균(1,295개), 대도시 평균(1,935개), 해당그룹 평균(2,035개)보다 많음.
 - －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횟수는 12건으로 전국 평균(102건), 대도시 평균(111건), 해당그룹 평균(131건)보다 적음.
 - － 청소년 보호법상 적발 단속건수는 9건으로 전국 평균(8건), 대도시 평균(15건), 해당그룹 평균(15건)보다 적음.

〈표 2-16〉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지역	청소년 유해 업소 단속 횟수	청소년 보호법상 적발 단속건수	청소년유해업소수	(단위: 건수, 개, 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전국	102.27	8.27	1,295.00	4.33
대도시	111.11	14.95	1,935.34	3.17
해당그룹	131.42	14.68	2,034.68	3.31
동대문구	12.00	9.00	2,156.00	0.47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대도시는 74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일적: $\{(단속횟수/청소년유해업소수 \times 0.4) + (적발건수/청소년유해업소수 \times 0.6)\} \times 100$
 - 단속횟수: 공식적으로 일지에 기재되었거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한 횟수를 말함.
 - 단속횟수의 경우 1일 기준으로 결재한 것을 1회로 산정하나 기간을 정하여 단속명령(결재서류 또는 단속결과보고서류에서 확인)이 있는 경우는 횟수를 단속일수로 함. (예: 5일간 단속한 경우 5회로 인정)
 - 적발건수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한 건수 모두 포함

□ 동대문구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는 0점으로 전국 평균 0.50 점, 대도시 평균 0.31점, 해당그룹 평균 0.39점보다 낮음.

○ 청소년지원센터의 미설치 및 CYS-Net의 미시행으로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판단됨.

〈표 2-17〉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단위: 개, 점)

지역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여부(설치) ¹⁾	CYS-Net 시행 여부(시행) ¹⁾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전국	133	75	0.50
대도시	25	18	0.31
해당그룹	8	6	0.39
동대문구 ²⁾	0	0	0.00

주: 1) 전국 232개 지자체, 대도시 74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19개 지자체의 합계임; 2)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여부: 설치(1), 미설치(0), CYS-Net 시행여부: 시행(1), 미시행(0); 3)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는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 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대도시는 74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자치단체 \times 0.7) + (CYS-Net 시행 자치단체 \times 0.3)\} / 시군구수$
 -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비 보조 기관임.
 - CYS-Net 시행 자치단체는 ‘시도 및 시군구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지침’에 의거 국고와 지방비 보조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임
 -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동대문구의 청소년수련시설 가동률은 4.17%임.

○ 전국 평균 1.01%, 대도시 평균 1.39%, 해당그룹 평균 1.21%보다 높은 수준을 보임.

〈표 2-18〉 청소년수련시설 가동률

(단위: 명, %)

지역	연간이용자수	수용 정원	청소년수련시설 가동률
전국	181,040.67	569.00	1.01
대도시	312,030.86	720.69	1.39
해당그룹	375,906.89	929.68	1.21
동대문구	991,173.00	789.00	4.17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대도시는 74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p>○ 청소년수련시설 가동률 평가점수: {연간 이용자수/(수용정원×연간시설 가동가능일수)}×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내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공공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07.12.31 현재 등록 운영 중인 시설에 한함) - 연간 이용자수: 해당 시·군·구내에 있는 공공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전체 이용자수 ※ 연간 이용자수는 보건복지부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수용정원: 『청소년활동진흥법 별표 2(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법적 수용 정원 - 연간가동가능일수: 시설자체 휴관일을 제외한 일수(08년 기준: 301일) * 365일중 휴관일(주1회 휴가+추석+설 명절)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기준
--

나. 아동·청소년복지 서비스 활용도

□ 동대문구의 지역사회아동 방과후 보호 비율은 1.25%임

○ 이는 전국 평균 8.97%, 대도시 평균 7.09%, 해당그룹 평균 4.76%보다 낮은 수준임.

〈표 2-19〉 지역사회아동 방과후 보호 비율

(단위: 명, %)

지역	국민기초생활수급 아동수	방과후 보호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수급 아동수	지역사회아동 방과후 보호 비율
전국	1,338.87	116.37	8.97
대도시	1,826.69	129.65	7.09
해당그룹	1,792.63	134.84	7.62
동대문구	1,595.00	20.00	1.25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대도시는 74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지역사회아동 방과후 보호비율: (방과후 보호아동 중 국민기초생활수급 초등학교 아동수/국민기초생활수급 초등학교 아동수)×100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보육시설 등 법적요건에 의해 설치된 시설에서 저소득층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프로그램 운영시 모두 포함(방과후 학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초등학교 아동수는 보건복지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통합연명부 발행을 이용하도록 함.(보건복지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복지정책지원→ 사업실적 내역 출력→ 수급자 현황→ 연령별 현황→ 해당년도→ 해당분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아동수를 파악하도록 함)
- 방과후 아동보호 실시기관별 방과후 보호대상 아동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와 초등학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 제1항에 의하면, 아동이 만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 초부터 만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초등학생수 및 방과후 보호대상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초등학생수는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산정되어야 함.(보건복지부 현황자료에 의함)

□ 동대문구의 아동발달지원계획(CDA) 저축률은 52.63%임.

- 이는 전국 평균(86.14%), 대도시 평균(83.22%), 해당그룹 평균(75.76%)보다 낮은 수준임.

〈표 2-20〉 아동발달 지원계획(CDA) 저축률

(단위: 명, %)

지역	아동발달 지원계획 개설 아동수	아동발달 지원계획 개설 아동 중 저축 아동수	아동발달 지원계획(CDA) 저축률
전국	137.93	116.58	86.14
대도시	168.24	132.82	83.22
해당그룹	199.32	117.21	75.76
동대문구	19.00	10.00	52.63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대도시는 74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아동발달 지원계획(CDA) 저축률: (아동발달 지원계획 개설 아동수 중 저축 아동수/아동발달 지원계획 개설 아동수)×100
- 08.12월 현재 요보호아동 중에서 아동발달 지원계획 개설 아동 중 저축 아동수의 비율을 의미함.
- 대상아동은 소년소녀가정아동, 가정위탁아동, 아동보호시설아동, 공동생활아동, 시설보호 장애아동 등이며, 만 0~17세 아동으로써 보호기간이 6개월 이상인 아동만을 대상으로 지원함. (보건복지부 현황자료에 의함)

□ 동대문구의 요보호아동 관내보호 비율 및 타 지역발생 보호아동 비율은 0.28%로 전국 평균 0.59%, 대도시 평균 0.52%, 해당그룹 평균 0.49%보다 낮음.

- 요보호 아동 중 관내보호비율은 전국, 대도시 및 해당그룹 평균보다 낮은 반면, 관내보호아동 중 타 지역 발생 보호아동 수는 이들보다 높음.
- 요보호아동 중 관내보호비율은 3%로 전국 평균(82%), 대도시 평균(69%),

해당그룹 평균(65%) 보다 낮음.

- 관내보호아동 중 타 지역 발생 보호아동 수는 85%로 전국 평균(5%), 대도시 평균(12%), 해당그룹 평균(7%)보다 높음.

〈표 2-21〉 요보호아동 관내보호 비율 및 타 지역 발생 보호아동 비율

(단위: 건, 명, %)

지역	관내 요보호아동 발생수	관내 보호조치 아동수	요보호 아동 중 관내보호 비율	관내시설 보호·가정 보호 아동수	타 지역발생 보호아동수	관내보호아동 중 타 지역발생 보호 아동수	요보호아동 관내 보호비율 및 타 지역발생 보호아동 비율
전국	55.73	34.32	0.82	168.13	11.15	0.05	0.59
대도시	107.50	50.00	0.69	205.49	29.41	0.12	0.52
해당그룹	112.84	37.63	0.65	181.05	22.42	0.13	0.49
동대문구	1,138.00	35.00	0.03	211.00	179.00	0.85	0.28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대도시는 74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요보호아동 관내보호 비율 및 타 지역발생 보호아동 비율: $\{(시군구 발생\&보호조치 아동수(B)/시군구 발생 요보호 아동수(A)) \times 0.7\} + \{(타 지역 발생\&관내보호 아동수(E)/시군구 시설보호\&가정보호 아동수(D)) \times 0.3\}$

- 시군구 발생\&보호조치 아동수(B): 해당 시군구 발생 요보호아동 중 관내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수
- 시군구 발생 요보호 아동수(A): 요보호아동 발생 아동수('08.12월 기준, 누계)
- 타 지역 발생\&관내보호 아동수(E): 타시군구에서 발생한 요보호아동을 관내에서 보호한 아동수
- 시군구 시설보호\&가정보호 아동수(D):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보호아동 현원

4. 보육

□ 동대문구의 「보육서비스 확대 실적」은 100점 만점에 49점으로 전국 평균 65.75점 보다 16.75점 낮은 수준임.

- ‘보육수요 충족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수’, ‘영유아 보육시설 평가인증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음
 -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 평가인증률의 경우 40점 만점에 16점(기본점수)으로 전국 평균 26.63점보다 10.63점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그렇지만 ‘취약보육실시율’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아 타 세부 평가지표에 비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2-22〉 보육의 전국 평균 및 동대문구 점수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단위: 점)		
		만점	전국 평균	동대문구
보육서비스 확대 실적	보육수요 충족률	20	13.79	11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수	20	11.38	8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40	26.63	16
	취약보육 실시율	20	13.95	14
	계	100	65.75	49

가. 보육서비스 확대 실적

- 동대문구의 「보육수요 충족률」은 49.80%로 전국 평균 55.82%, 대도시 평균 50.26%, 해당그룹 평균 49.13%보다 낮거나 비슷함.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6.02%pt, 대도시 평균보다는 0.46%pt 낮으며 해당그룹 평균보다는 0.67%pt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3〉 보육수요 충족률

지역	(단위: 명, %)		
	전체 보육시설 정원	전체 영유아수	보육수요 충족률
전국	6,159.92	11,995.57	55.82
대도시	7,776.72	16,322.53	50.26
해당그룹	9,038.53	18,859.42	49.13
동대문구	8,909.00	17,890.00	49.8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대도시는 74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보육수요 충족률: (보육시설 정원수/전체 영유아수)×100
 - 보육시설 정원은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에 공표되는 지역별 보육시설 보육아동(정원) 현황 자료를 활용함.
 - 평가연도의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며,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특정 월(9월 또는 6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함.
 -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동대문구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수는 2개소 감소로 전국 평균 0.36개소, 대도시 평균 -0.11개소, 해당그룹 평균 -0.47개소에 비해 많이 감소함.
 - 이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임.

〈표 2-24〉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수

(단위: 명, 건)

지역	07년 국공립 보육시설 수	08년 국공립 보육시설 수	전체 영유아수	보육시설 정원수	보육시설 이용 전체 영유아 수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수
전국	7.51	7.87	11,995.57	6,159.92	4,894.41	531.92	0.36
대도시	12.91	12.80	16,322.53	7,776.72	6,322.28	940.99	-0.11
해당그룹	14.58	14.11	18,859.42	9,038.53	7,333.16	1,054.37	-0.47
동대문구	24.00	22.00	17,890.00	8,909.00	7,239.00	1,778.00	-2.0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대도시는 74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수: 08년 국공립 보육시설수-07년 국공립 보육시설수
- 평가연도의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며,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특정 월(9월 또는 6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함.
 - 보육시설 공급 초과지역이나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 일정 수준 충족시 기본점수 부여
 - 보육시설 공급 초과지역: 전체 영유아 수 대비 보육시설 정원수 비율이 100%가 넘는 지역
 -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 일정 수준 충족 지역: 전체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수 대비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비율이 30%가 넘는 지역
-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동대문구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은 22.07%로 전국 평균 30.03%, 대도시 평균 28.81%, 해당그룹 평균 27.51%보다 낮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보다는 7.96%pt, 대도시 평균보다는 6.74%pt, 해당그룹 평균보다는 5.44%pt 낮은 것임.

〈표 2-25〉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단위: 건, %)

지역	전체 보육시설수	평가인증 보육시설수	당해연도 평가인증 보육시설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전국	142.95	42.78	23.19	30.03
대도시	179.32	60.01	32.09	28.81
해당그룹	218.47	74.79	37.26	27.51
동대문구	213.00	68.00	26.00	22.07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대도시는 74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평가인증 보육시설 비율+당해연도 평가인증 보육시설 비율)/2
- 평가인증 보육시설 비율: (평가인증 보육시설수/전체 보육시설수)×100
 - 시군구의 전체 보육시설 중 평가인증을 획득한 보육시설 비율
 - 당해연도 평가인증 보육시설 비율은: (당해연도 평가인증 보육시설수/전체 보육시설수)×100
 - 시군구의 전체 보육시설 중 당해연도에 평가인증을 획득한 보육시설의 비율
-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동대문구의 취약보육 실시율은 45.35%로 전국 평균 43.44%보다 높고, 대도시 평균 46.51%, 해당그룹 평균 45.92%보다는 다소 낮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보다 1.31%pt 높고, 대도시 평균보다 1.16%pt, 해당그룹 평균보다 2.12%pt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동대문구의 취약보육 실시율이 평균적으로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 그러나 휴일보육 이용 아동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표 2-26〉 취약보육 실시율

(단위: 명, %)

지역	보육시설 이용 전체 아동수	영아 보육 이용수	장애아 보육 이용수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수	휴일보육 이용수	취약보육 실시율
전국	4,894.41	2,163.31	66.94	75.99	0.19	43.44
대도시	6,322.28	2,805.85	94.96	92.73	0.22	46.51
해당그룹	7,333.16	3,321.11	94.42	102.53	0.53	47.47
동대문구	7,239.00	3,170.00	47.00	66.00	0.00	45.35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대도시는 74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취약보육실시율: (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휴일보육 이용 아동수/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100
 - 시도별 취약 보육 이용 아동수는 e-보육 통계시스템으로 파악함.
 - 영아이면서 장애아인 경우는 중복으로 계산함.
 - 영아는 만3세 미만 아동, 장애아는 무상보육대상 장애아를 의미함.
 *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실적)에 의함

5. 장애인복지

□ 동대문구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기반 확충도」는 100점 만점에 46점으로 전국 평균 56.32점보다 낮음.

- 전체적으로 세부 평가지표는 전국 평균보다 낮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높음.

□ 동대문구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혜율」은 100점 만점에 40점(기본점수)으로 전국 평균 71.62점보다 낮음.

-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혜율’은 기본점수만을 획득한 것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활성화가 요구됨.
- 동대문구의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사업 성과』는 100점 만점에 60점으로 전국 평균 66.96점보다 다소 낮음.
 - ‘우선구매비율 준수율’, ‘우선구매대상 품목구매 비율’, ‘우선구매비율 충족품목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음.
 - 그렇지만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구매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음.

〈표 2-27〉 장애인복지의 전국 평균 및 동대문구 점수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단위: 점)		
		만점	전국 평균	동대문구
장애인복지 서비스 기반 확충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율	30	17.90	12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	25	15.10	1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15	6.62	6
	『장애인차별금지법』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20	11.35	14
	장애인전용 주차지역 과태료 부과건수	10	5.36	4
	계	100	56.32	46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혜율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혜율	100	71.62	40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사업 성과	우선구매비율 준수율	50	33.71	28
	우선구매대상 품목구매 비율	30	21.23	21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구매 비율	10	5.81	6
	우선구매 비율 충족품목 비율	10	6.21	5
	계	100	66.96	60

가. 장애인복지 서비스 기반 확충도

- 동대문구의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설치율은 0%로 매우 낮음.
 - 이는 전국 평균 0.35%, 대도시 평균 0.50%, 해당그룹 평균 0.35%보다 낮은 수준임.

〈표 2-28〉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율

(단위: 명, %)

지역	등록장애인수	직업재활 시설수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총 정원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율
전국	9,686	1.56	30.23	0.35
대도시	12,427	2.39	46.01	0.50
해당그룹	14,042	2.63	54.16	0.35
동대문구	15,499	1.00	0.00	0.0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대도시는 74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율: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정원수/등록장애인수)×100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근로장애인 정원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시설로서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이며,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근로장애인의 정원 수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사업장, 보호사업장,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
 - 장애인 인구수: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설치율이 0%인 지자체는 최저점수 부여

□ 동대문구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이는 전국 평균 1.19%, 대도시 평균 1.50%, 해당그룹 평균 0.85%과 비교되는 것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확충이 필요함을 시사함.

〈표 2-29〉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

(단위: 명, %)

지역	등록장애인수	거주시설수	거주시설 총 정원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
전국	9,686	5.66	100.39	1.19
대도시	12,427	8.85	134.11	1.50
해당그룹	14,042	8.05	137.16	0.85
동대문구	15,499	1.00	0.00	0.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대도시는 74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 (거주시설입소 장애인 정원수/등록장애인수)×100
 - 거주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중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시설로서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로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 이들 시설의 입소 정원 총수
 - 장애인 인구수: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02~06년까지 신고한 조건부시설에서 전환된 개인운영 신고시설은 제외
 ※ 설치율이 0%인 지자체는 최저점수 부여

□ 동대문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0.72%로 전국, 대도시, 해당그룹의 평균보다 낮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63.76%)과 비교했을 때 63.04%pt, 대도시 평균(50.44%)보다 49.72%pt, 해당그룹 평균(40.3%)보다 39.58%pt 낮음.

〈표 2-30〉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개소, %)

지역	설치대상 건물수(설치의무 항목수)	기설치 건물수(설치 항목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전국	14,998.54	9,130.94	63.76
대도시	18,927.93	8,916.76	50.44
해당그룹	23,496.89	12,441.37	40.30
동대문구	12,393.00	89.00	0.72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대도시는 74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정원기준): (기설치 건물수/설치대상 건물수)×100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별 설치율(시·군·구별 파악)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별도증빙 불필요)

- 동대문구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는 4점으로 분석됨.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법적 의무사항으로서 지자체에서 반드시 설치 또는 배치해야 하는 8개 항목 중 준수하고 있는 것은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점자자료제작, 영상전화기, 장애인전담도우미 등임.
 - 전국, 대도시, 해당그룹보다 동대문구는 이를 잘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른 항목들의 보완은 필요하다는 판단임.

〈표 2-31〉 「장애인차별금지법」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단위: 개소)

지역	인쇄물 음성출력기기 ¹⁾	점자자료 제작 ¹⁾	영상 전화기 ¹⁾	수화 통역사 ¹⁾	장애인전담 도우미 ¹⁾	보청 기기 ¹⁾	확대경 ¹⁾	휠체어 ¹⁾	「장애인차별금지법」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전국	18	36	70	51	81	59	59	53	1.84
대도시	4	13	13	4	7	19	13	10	1.12
해당그룹	1	2	1	0	1	2	0	0	0.37
동대문구	1	1	1	0	1	0	0	0	4.00

주: 1) 전국 232개 지자체, 대도시 74개 지자체, 해당그룹 19개 지자체의 합계임; 2) 「장애인차별금지법」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는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대도시는 74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장애인차별금지법」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인쇄물음성출력기기·접자자료 제작·영상전화기·수화통역사·장애인전담도우미·보청기기·확대경·휠체어에 대한 준수여부 파악(*1: 예, 0: 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공공기관의 법적 의무사항(인쇄물음성출력기기·접자자료 제작·영상전화기·보청기기·확대경 설치 및 수화통역사·장애인전담도우미 배치 등)에 대한 준수 여부 파악
- * 기관별 설치 또는 배치 여부만 파악(사용횟수는 무관함)

□ 동대문구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건수는 6건으로 전국 평균 13.29건, 대도시 평균 19.45건, 해당그룹 평균 24.63건에 비해 현저히 낮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 활발한 단속을 통해 장애인 편의확보가 요망됨.

〈표 2-3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건수

(단위: 건수)

지역	과태료 부과건수
전국	13.29
대도시	19.45
해당그룹	24.63
동대문구	6.0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대도시는 74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건수: 과태료 부과건수/시군구수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부과건수

나.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혜율

□ 동대문구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은 13.86%로 해당그룹 평균보다는 높으나 전국 및 대도시의 평균보다는 낮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그룹 평균(11.32%)보다 2.54%pt 높으나, 전국 평균(20.89%)보다 7.03%pt, 대도시 평균(14.32%)보다 0.46%pt 낮음.

〈표 2-33〉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

(단위: 명, %)

지역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혜자수	등록장애인수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
전국	1,708	9,685	20.89
대도시	1,605	12,424	14.32
해당그룹	1,766	14,027	11.32
동대문구	2,148	15,499	13.86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대도시는 74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자수/등록장애인수)×100
-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자수: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수혜한 자들의 총수(연평균)
 -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서비스를 수혜한 경우 이중으로 처리함.
 - 복지서비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활동보조서비스
 - * 등록장애인수: 보건복지부 현황자료에 의함(증빙 불필요)
 -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자 현황: 새올행정시스템에 의함.
 - 다만, 새올행정시스템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장애수당 수혜자 현황(예. 주소지가 다른 시설 수급자)은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새올행정시스템에 의한 장애수당 수혜자 수와 보건복지부에서 파악한 현황자료상 장애수당 수혜자 수를 합하여 입력

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사업 성과

□ 동대문구의 우선구매 비율 준수율은 42.86%로 전국, 대도시, 해당그룹의 평균보다 낮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80.05%)보다 37.19%pt, 대도시 평균(68.64%)보다 25.78%pt, 해당그룹 평균(64.62%)보다 21.76%pt 낮음.

〈표 2-34〉 우선구매 비율 준수율

(단위: 개, %)

지역	우선구매 비율 충족품목 수	우선구매대상 구매품목 수	우선구매 비율 준수율
전국	8.95	11.69	80.05
대도시	7.78	12.20	68.64
해당그룹	7.16	12.26	64.62
동대문구	3.00	7.00	42.86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대도시는 74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우선구매 비율 준수율: (우선구매 비율 충족 품목 수/우선구매대상 품목구매 품목 수)×100
- 우선구매 비율 충족품목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품목 18개 중 우선구매 비율을 충족한 품목의 개수
 - 우선구매대상 품목 구매품목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품목 18개 중 구매실적이 있는 품목 개수
 -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동대문구의 우선구매대상 품목구매 비율은 76.55%로 전국, 대도시, 해당그룹의 평균보다 높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57.07%)보다 19.48%pt, 대도시 평균(49.23%)보다 27.32%pt, 해당그룹 평균(42.93%)보다 33.62%pt 높음.

〈표 2-35〉 우선구매대상 품목구매 비율

(단위: 원, %)

지역	우선구매대상 품목 중 장애인 생산	우선구매대상 품목구매 총액	우선구매대상 품목구매 비율
전국	110,265	226,692.80	57.07
대도시	168,977	376,350.40	49.23
해당그룹	139,742	428,298.50	42.93
동대문구	18,203	23,780.00	76.55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대도시는 74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우선구매대상 품목구매 비율: (우선구매대상 품목 중 장애인생산품 구매액/우선구매대상 품목 구매 총액)×100
- 우선구매대상 품목 중 장애인생산품 구매액: 18개 우선구매품목 중 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의 합계
- 우선구매대상 품목 구입총액: 우선구매품목 18개의 구매액 총계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한.

□ 동대문구의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구매 비율은 57.36%로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으나 대도시 및 해당그룹의 평균보다는 높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58.59%)보다 1.23%pt 낮으나, 대도시 평균(41.45%)보다 15.91%pt, 해당그룹 평균(35.5%)보다 21.86%pt 높음.

〈표 2-36〉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구매 비율

(단위: 원, %)

지역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중 장애인생산품 구매액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구매 총액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구매 비율
전국	17,801.08	45,785.41	58.59
대도시	14,191.50	80,134.03	41.45
해당그룹	44,708.74	117,608.30	35.50
동대문구	482,836.00	841,793.00	57.36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대도시는 74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 구매 비율: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 중 장애인생산품 구매액/우선구매대상 외 품목 구매 총액)×100
-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 중 장애인생산품 구매액: 18개 우선구매품목을 제외한 기타 물품구입 중 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의 합계
-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 구매총액: 우선구매품목 18개 이외 물품 구매액 총계
-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동대문구의 우선구매 비율 총족품목 비율은 16.67%로 전국, 대도시, 해당그룹의 평균보다 낮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49.78%)보다 33.11%pt, 대도시 평균(43.32%)보다 26.65%pt, 해당그룹 평균(39.77%)보다 23.1%pt 낮음.

〈표 2-37〉 우선구매 비율 총족품목 비율

(단위: 개, %)

지역	우선구매 비율 총족품목 수	우선구매 비율 총족품목 비율
전국	8.96	49.78
대도시	7.79	43.32
해당그룹	7.16	39.77
동대문구	3.00	16.67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대도시는 74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우선구매 비율 총족품목 비율: (우선구매 비율 총족품목수/우선구매대상 품목수)×100
- 우선구매대상 비율 총족품목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품목 18개 중 우선구매 비율을 충족한 품목의 개수
- 우선구매대상 품목 수: 18개
-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6. 지역사회서비스

□ 동대문구의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는 100점 만점에 64점으로 전국 평균 62.41점보다 조금 높음.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맞춤형) 시행률’은 40점 만점에 40점으로 매우 높음.
- 그렇지만 그 외의 세부 평가지표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동대문구의 『사회서비스사업 활용도』는 100점 만점에 40점(기본점수)으로 전국 평균 61.56점보다 낮음.

○ ‘사회서비스사업 활용의 안정률(노인돌보미 제외)’과 ‘사회서비스사업 이용률’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보다 낮음.

－ 특히, 이 두 세부 평가지표 모두 50점 만점에 40%(기본점수)에 불과함.

□ 동대문구의 『사회서비스업무 추진의 적절성』은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전국 평균 71.24점보다 낮음.

○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액 실적’과 ‘사회서비스 예산 대비 집행률’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음.

－ 특히,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액 실적’은 50점 만점에 40% 이하의 점수를 보임.

〈표 2-38〉 지역사회서비스의 전국 평균 및 동대문구 점수

(단위: 점)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만점	전국 평균	동대문구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맞춤형) 시행률	40	25.36	4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참여율(지역맞춤형)	30	19.06	1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개발형) 취업자 수	30	17.98	12
	계	100	62.41	64
사회서비스사업 활용도	사회서비스사업 활용의 안정률(노인돌보미 제외)	50	28.29	20
	사회서비스사업 이용률	50	33.26	20
	계	100	61.56	40
사회서비스 업무 추진의 적절성	사회서비스 예산 대비 집행률	50	35.05	35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액 실적	50	36.19	20
	계	100	71.24	55

가.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 동대문구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맞춤형) 시행률은 5%임.

○ 이는 전국 평균 2.83%, 대도시 평균 4.49%, 해당그룹 평균 4.00%보다 높은 수준임.

〈표 2-3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맞춤형) 시행률

(단위: 건, %)

지역	08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평균 시행건수
전국	2.83
대도시	4.49
해당그룹	4.00
동대문구	5.0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대도시는 74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맞춤형) 시행률: (08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행건수/시군구수)×100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맞춤형) 시행건수: 08년 시군구당 사업시행 건수
 * 사업건수는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와 일치하게 입력

□ 동대문구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참여율(지역맞춤형)은 0.36%로 전국, 대도시, 해당그룹의 평균보다 낮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1.29%)보다 0.93%pt, 대도시 평균(1.51%)보다 1.15%pt, 해당그룹 평균(1.41%)보다 1.05%pt 낮음.

〈표 2-4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참여율(지역맞춤형)

(단위: 기관, %)

지역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평균 시행건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평균 제공기관수	제공기관이 20이상인 사업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참여율(지역맞춤형)
전국	2.83	5.72	1.25	1.29
대도시	4.49	9.78	1.82	1.51
해당그룹	4.42	9.42	1.63	1.41
동대문구	7.00	5.00	0.00	0.36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대도시는 74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참여율(지역맞춤형): {(제공기관수/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전체 사업수)×0.5}+{(서비스제공기관이 2개 이상인 사업 수/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전체 사업수)×0.5}
 - 시군구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맞춤형)의 1개 사업당 서비스 제공기관 수
 - 시군구에서 시행 중인 전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맞춤형)의 1개 사업당 서비스 제공기관이 2개 이상인 사업
 * 사업실적은 보건복지부의 현황 자료(실적)와 일치하게 입력

□ 동대문구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개발형) 평균 취업자 수는 151명으로 전국, 대도시, 해당그룹의 평균보다 낮음.

○ 특히, 해당그룹 평균 453.11명의 약 1/3 수준에 머물고 있음.

〈표 2-4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개발형) 취업자 수

(단위: 명, %)

지역	08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평균 취업자수
전국	249.69
대도시	403.95
해당그룹	453.11
동대문구	151.0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대도시는 74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개발형) 취업자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취업자수/시군구수)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창출 일자리 수
 - * 월별 누계 인원, 정규·비정규직 등 바우처 사업에 종사한 모든 근로자 포함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와 일치하게 입력

나. 사회서비스사업 활용도

- 동대문구의 사회서비스사업 활용의 안정률(노인돌보미 제외)은 6.16%로 전국, 대도시, 해당그룹의 평균보다 낮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22.18%)보다 16.02%pt, 대도시 평균(23.24%)보다 17.08%pt, 해당그룹 평균(21.88%)보다 15.72%pt보다 낮은 수준임.

〈표 2-42〉 사회서비스사업 활용의 안정률(노인돌보미 제외)

(단위: 명, %)

지역	중도 해지자수	전체 서비스 이용자수	사회서비스사업 활용의 안정률(노인돌보미 제외)
전국	483.32	2,407.19	22.18
대도시	680.46	2,999.04	23.24
해당그룹	844.00	3,583.95	21.88
동대문구	151.00	2,453.00	6.16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대도시는 74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사회서비스사업 활용의 안정률: (중도 해지자수/전체 서비스 이용자수)×100
 - * 4대 바우처 중 노인돌보미 제외
 - 전체 서비스 이용자 수: '08년 연간 전체 서비스 이용자수
 - 중도 해지자수: 사업 참여자 중 지원기간 종료 외의 사유로 중도 해지된 인원
 -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한

□ 동대문구의 사회서비스사업 이용률은 0.68%로 전국, 대도시, 해당그룹의 평균보다 낮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1.35%), 대도시 평균(1.09%), 해당그룹 평균 (0.98%)보다 낮게 나타남.

〈표 2-43〉 사회서비스사업 이용률

(단위: 명, %)

지역	서비스 이용자수	시군구별 인구수	사회서비스사업 이용률
전국	2,494.28	213,850.87	1.35
대도시	3,072.20	310,873.08	1.09
해당그룹	3,666.05	346,553.10	0.98
동대문구	2,534.00	370,250.00	0.68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대도시는 74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사회서비스사업 이용률: (서비스 이용자수/인구수)×100

- * 4대 바우처 공통적용
- * 4대 바우처 사업 대상자수: 노인, 장애인, 산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대상자수
- 서비스 이용자수: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들의 수
- * 사업대상자수: 노인, 장애인, 산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4대 바우처 대상자수
- 인구수: '08년 12월말 기준(통계청 자료 참조)
-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 사회서비스 바우처 통합정보 운영자 시스템상 실적과 동일하게 입력

다. 사회서비스 업무 추진의 적절성

□ 동대문구의 사회서비스 예산 대비 집행률은 85.90%로 전국, 대도시, 해당그룹의 평균보다 높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83.03%)보다 2.87%pt, 대도시 평균 (83.35%)보다 2.55%pt 높으나, 해당그룹 평균(89.04%)보다는 3.14%pt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44〉 사회서비스 예산 대비 집행률

(단위: 천원, %)

지역	집행액	예산액	사회서비스 예산 대비 집행률
전국	1,132,460.9	1,324,809.4	83.03
대도시	1,516,614.9	1,801,297.7	83.35
해당그룹	1,709,393.0	1,882,390.2	89.04
동대문구	924,051.4	1,075,753.5	85.9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대도시는 74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사회서비스 예산 대비 집행률: (집행액/예산액)×100
 - 집행액: 시군구별 예산 실 집행액
 - 예산액: 시군구별 예산 편성액(결산서 기준)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와 일치하게 입력

□ 동대문구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액 실적은 7.53%로 전국, 대도시, 해당그룹의 평균보다 상당히 낮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81.75%)보다 74.22%pt, 대도시 평균(66.95%)보다 59.42%pt, 해당그룹 평균(64.19%)보다 56.66%pt 낮음.

〈표 2-45〉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액 실적

(단위: 천원, %)

지역	이용액	생성액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액 실적
전국	1,114,984.3	1,604,458.0	81.75
대도시	1,516,614.9	2,724,288.1	66.95
해당그룹	1,638,553.8	3,004,622.5	64.19
동대문구	344,853.0	4,577,900.0	7.53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대도시는 74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액 실적: (이용액/생성액)×100
 - 이용액: 바우처 이용액
 - 생성액: 바우처 생성액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와 일치하게 입력

7. 기초생활보장

□ 동대문구의 「기초생활보장 업무기반 확충도」는 100점 만점에 70점으로 전국 평균 79.64점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관리수급 가구수’는 50점 만점으로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 참여실적’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전국 평균(30.94점)보다 낮음.
 - 특히, 만점의 40%(기본점수)에 머물고 있어 기초생활 보장 모니터링 등 중앙 및 광역 지자체의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동대문구의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은 100점 만점에 76점으로 전국 평균 67.49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신규수급자 발굴실적’은 전국 평균보다 높아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급여조정 실적’과 ‘긴급지원 활성화 시행실적’은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임.

〈표 2-46〉 기초생활보장의 전국 평균 및 동대문구 점수

(단위: 점)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만점	전국 평균	동대문구
기초생활보장 업무기반 확충도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관리수급가구 수	50	48.70	50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 참여실적	50	30.94	20
	계	100	79.64	70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신규수급자 발굴실적	40	25.41	34
	급여조정 실적	40	28.05	28
	긴급지원 활성화 시행실적	20	14.02	14
	계	100	67.49	76

가. 기초생활보장 업무기반 확충도

- 동대문구의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관리 수급가구수는 85.50명으로 전국 평균 89.84명, 대도시 평균 107.93명, 해당그룹 평균 116.29명보다 적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보다 4.34명, 대도시 평균보다 22.43명, 해당 그룹 평균보다 9.3명 적음.
 - 따라서 상대적으로 사회복지부서 공무원의 기초생활보장관련 업무부담이 적어 수급가구가 잘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2-47〉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관리수급가구 수

(단위: 가구, 명)

지역	수급가구수	사회복지직 공무원수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관리 수급가구 수
전국	3681.92	39.34	89.84
대도시	4,699.95	44.14	107.93
해당그룹	4,792.79	48.84	94.80
동대문구	5,388.00	63.00	85.5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대도시는 74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관리 수급가구수: 수급자수/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수
 -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 '08.12.31일 기준으로 읍면동에서 현원으로 잡혀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중 기초수급자 관리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직(직급상관 없음)수를 시군구 단위로 합산한 수(새올행정시스템 권한이 확인된 인원수)
 - 수급자 수: 2008.12월 31일 현재 수급자수(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된 수)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와 일치하게 입력

□ 동대문구의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 참여실적은 없으며, 전국 평균 0.28건, 대도시 평균 0.36건, 해당그룹 평균 0.44건과 비교됨.

○ 향후 중앙정부 및 광역 지자체의 복지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보다 많은 경험과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음.

〈표 2-48〉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 참여실적

(단위: 명, 회)

지역	모니터링 요원수 ¹⁾	중앙현장 조사횟수 ¹⁾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 참여실적
전국	44	116	0.28
대도시	16	51	0.36
해당그룹	6	14	0.44
동대문구	0	0	0.00

주: 1) 전국 232개 지자체, 대도시 74개 지자체, 해당그룹 19개 지자체의 합계임; 2)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 참여실적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대도시는 74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 참여실적: (모니터링 요원수×0.7)+(중앙현장조사 횟수×0.3)
 - 모니터링 요원: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 요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자(파견자 포함)
 - 중앙현장조사요원 파견: '08년 중 중앙현장조사에 참여한 연인원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와 일치하게 입력

나.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 동대문구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은 19.84%로 전국 평균 12.41%, 대도시 평균 14.52%, 해당그룹 평균 15.06%보다 모두 높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보다는 7.43%pt, 대도시 평균보다 5.32%pt, 해당그룹 평균보다 4.78%pt 높음.

－ 이는 포천시의 신규수급자 발굴이 비교적 잘 수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표 2-49〉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단위: 명, %)

지역	신규 수급자수	총 수급자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전국	794.35	6,224.18	12.41
대도시	1,144.29	8,180.95	14.52
해당그룹	1,177.00	8,074.89	15.06
동대문구	1,651.00	8,323.00	19.84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대도시는 74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신규 수급자수/총 수급자수)×100
 - 신규 수급자수: '08년 1~12월 중 수급자로 결정되어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된 가구원수
 - 총 수급자수: '08.12.31일 현재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된 수급자수

□ 동대문구의 급여조정 실적은 0.76건으로 전국 평균 0.76건, 대도시 평균 0.76건, 해당그룹 평균 0.78건과 비슷한 수준임.

○ 이는 급여조정이 평균적으로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

〈표 2-50〉 급여조정 실적

(단위: 건, 가구)

지역	보장종지 건수	급여감소 건수	급여증가 건수	수급자 가구수	급여조정 실적
전국	881.58	4,633.56	4,716.06	3,681.92	0.76
대도시	1,276.82	5,967.16	5,657.78	4,699.94	0.76
해당그룹	1,414.26	6,012.37	5,916.32	4,792.79	0.78
동대문구	1,534.00	8,090.00	5,130.00	5,388.00	0.76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대도시는 74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급여조정 실적: (보장중지 건수/수급자가구수×0.5)+(급여감소 건수/수급자가구수×0.25)+(급여증가 건수/수급자가구수×0.25)
 - 급여조정 범위: 수급자가구 중 '08. 1~2월까지 조사를 통해 보장중지되거나 급여가 변경결정되어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된 가구 수(중복포함, 누계)
 - 보장중지 건수: 수급자에게 중지된 건
 - 급여감소/증가건수: 생계, 주거급여가 감소/증가된 건
 - 가구원 전부, 일부 전출, 사망, 군입대, 교정시설 수용, 보장시설입소, 행불(가출), 최저생계비 기준(현금급여) 변경에 따른 급여조정 등은 제외
 - 수급자가구 수: '08.12.31일 현재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된 수급자가구 수

□ 동대문구의 긴급지원 활성화 시행실적은 0.26건으로 전국 평균 0.29건, 대도시 평균 0.29건, 해당그룹 평균 0.29건 보다 높음.

○ 이는 긴급지원의 활성화 정도가 평균적으로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

〈표 2-51〉 긴급지원 활성화 시행실적

(단위: 건)

지역	의료지원을 제외한 타 지원 결정 건수	차상위계층 등 긴급지원 결정 건수	전체 긴급지원 결정건수	긴급지원 활성화 시행실적
전국	17.58	61.28	118.17	0.32
대도시	26.54	86.58	171.77	0.29
해당그룹	15.00	86.26	165.79	0.29
동대문구	11.00	114.00	238.00	0.26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대도시는 74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긴급지원 활성화 시행실적: {(의료지원을 제외한 타 지원 결정건수/전체 긴급지원 결정건수)×0.5}+{(차상위계층 등 긴급지원 결정건수/전체 긴급지원 결정건수)×0.5}
 - 의료지원을 제외한 타 지원 결정건수: '08.1~12월까지 의료지원을 제외한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등 지원 결정하여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된 건수
 - 차상위계층 등 긴급지원 결정건수: '08.1~12월까지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 등 대상으로 긴급지원을 지원 결정하여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된 건수
 - * 공동: 수급자에는 특례, 시설수급자를 포함함(차상위수급자 제외)
 - * 새올행정시스템 관련자료 추출

8. 자활

□ 동대문구의 「자활사업 활성화 정도」는 100점 만점에 51점으로 전국 평균 71.31점 보다 낮음.

○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율’, ‘수급자의 취업·창업률’, ‘자활사업 참

여 수급자의 탈수급률'은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임.

〈표 2-52〉 자활영역의 전국 평균 및 동대문구 점수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만점	전국 평균	(단위: 점)
				동대문구
자활사업 활성화 정도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율	30	24.23	17
	수급자의 취업·창업률	30	19.63	12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40	27.51	22
	계	100	71.31	51

가. 자활사업 활성화 정도

□ 동대문구의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율'은 7.93%로 전국 평균, 대도시 평균, 해당그룹 평균보다 낮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29.32%)과 비교했을 때 21.39%pt, 대도시 평균(24.71%)보다 16.78%pt, 해당그룹 평균(22.93%)보다 15%pt 낮음.

〈표 2-53〉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율

지역	(단위: 명, %)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인원	자활사업 실질(누계) 참여인원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율
전국	80.47	287.45	29.32
대도시	102.58	443.21	24.71
해당그룹	97.26	460.16	22.93
동대문구	51.00	643.00	7.93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대도시는 74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율: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인원/자활사업 실질(누계) 참여인원)×100
- 1)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인원: 시장진입형+인턴형+공동체창업+개인 창업+취업알선
 - 2) 자활사업 실질(누계) 참여인원: 근로유지형+사회적응 프로그램+사회적일자리형+시장진입형+인턴형+공동체창업+개인창업+취업알선
-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인원: 업그레이트형 이상(사회적일자리형 제외)
 - 자활사업 실질(누계) 참여인원: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참여 인원
(* 보건복지부의 자료 활용) * 노동부 사업 제외

□ 동대문구의 ‘수급자의 취업·창업률’은 0%로 취업 및 창업이 전혀 이루어지 지 않았으므로 파악됨.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 8.3%, 대도시 평균은 7.52%, 해당그룹 평균은 6.09%과 비교되는 수준임.

〈표 2-54〉 수급자의 취업·창업률

(단위: 명, %)

지역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중 취업인원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중 창업한 인원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급자의 취업·창업률
전국	5.14	4.21	117.95	8.30
대도시	7.39	5.24	199.41	7.52
해당그룹	7.26	3.53	208.95	6.09
동대문구	0.00	0.00	101.00	0.0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대도시는 74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수급자의 취업·창업률: (취업 및 창업 인원/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누계) 수급자수)×100
1) 취업 및 창업한 인원: 수급자중 취업 및 창업한자+자활특례 상향 이동자+기타 소득기준 초과자
2)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누계) 수급자: 시장진입형+사회적일자리형+인턴형+자활공동체+개인창업+취업알선+노동부사업
- 취업 및 창업 인원: 자활사업 참여수급자 중 취업이나 창업한 인원
-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누계) 수급자 수: 수급자중 업그레이드형 이상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보건복지부에서 자료 활용)

□ 동대문구의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은 2.97%로 전국 평균, 대도시 평균, 해당그룹 평균보다 낮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7.48%)보다 4.51%pt, 대도시 평균(6.8%)보다 3.83%pt, 해당그룹 평균(5.97%)보다 3%pt 낮음.

〈표 2-55〉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단위: 명, %)

지역	수급자 중 취업 창업자수	특례상향 이동자	기타 소득기준 초과자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전국	3.38	3.21	2.13	117.95	7.48
대도시	5.70	4.62	2.97	199.41	6.80
해당그룹	5.79	4.47	2.16	208.95	5.97
동대문구	3.00	0.00	0.00	101.00	2.97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대도시는 74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탈수급자수/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누계) 수급자수)×100
- 1) 탈수급자수: 수급자 벗어난 인원(자활특례 포함)+기타 소득기준 초과자
- 2)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누계) 수급자: 시장진입형+사회적일자리형+인턴형+자활공동체+개인창업+취업알선+노동부사업
- 탈수급자 수: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중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수급자에서 벗어난 인원
-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누계) 수급자 수: 수급자중 업그레이드형 이상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
- *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분기별 자활사업 추진현황 보고 자료에 의함

9. 의료급여

가.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 동대문구의 ‘의료급여 자격처리의 신속도’는 1.28일로 분석됨.

- 의료급여 자격처리는 수급권자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보험건강보험공단 자격변경을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자격이 변경된 날짜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되어 정상 처리된 날짜 간의 간격을 좀 더 줄여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필요함.

〈표 2-56〉 의료급여 자격 처리의 신속도

(단위: 건, 일)

지역	자격변경처리 건수	총 소요일	의료급여 자격 처리의 신속도
전국	3,490.23	4,210.93	1.20
대도시	5,187.23	6,322.11	1.21
해당그룹	5,597.63	6,804.74	1.20
동대문구	8,355.00	10,676.00	1.28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대도시는 74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의료급여 자격처리의 신속도: 총 소요일/’08년 전체 자격변경 건수
- 의료급여 자격처리의 신속도: 자격건당 평균 소요일
- 2008년도 전체 자격변경 건수: 공단에 접수된 시군구별 자격변경 처리 총 건수
- 총 소요일: 각 건수의 처리에 소용된 소요일의 총 합
-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활용
-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동대문구의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입·내원일수 증가율’은 0.02%로 전국 평균 및 대도시 평균보다 높으며, 해당그룹 평균과 유사한 수준임.

-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입·내원일수 증가율은 의료급여 예산이 효율

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관리하는 수급권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 이상의 진료를 받는 수급권자를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음.

〈표 2-57〉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입·내원일수 증가율

(단위: 일, %)

지역	2006년도 적용인구 1인당 입·내원일수	2007년도 적용인구 1인당 입·내원일수	2008년도 적용인구 1인당 입·내원일수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입·내원일수 증가율
전국	63.39	62.55	63.74	0.01
대도시	61.34	61.04	61.51	0.01
해당그룹	60.85	60.40	61.83	0.02
동대문구	56.66	56.49	57.93	0.02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대도시는 74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입·내원일수 증가율: (전년 대비 1인당 입·내원일수 증가율+3년 평균 1인당 입·내원일수 증가율)/2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인당 입원 및 내원일수의 증감률을 파악
- 해당 시군구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1인당 당해연도와 전년도의 입·내원일수와 3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입·내원일수의 증감률을 평가함.
-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활용
-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동대문구의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0.05%를 보임.

○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의료급여 입·내원일수 증가율과 같이 의료급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므로 수급권자의 급여가 적정한 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당, 사위행위를 하는 수급권자를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음.

〈표 2-58〉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

(단위: 원, %)

지역	2006년도 적용인구 1인당 평균진료비	2007년도 적용인구 1인당 평균진료비	2008년도 적용인구 1인당 평균진료비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
전국	1,969.27	2,080.93	2,206.29	0.05
대도시	2,134.84	2,266.49	2,381.26	0.05
해당그룹	2,187.47	2,321.42	2,469.63	0.05
동대문구	2,270.00	2,447.00	2,588.00	0.05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대도시는 74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3년 평균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2
 - 의료급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였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임.
 - 해당 시군구의 의료급여 수급원자들의 1인당 당해연도와 전년도와 평균 진료비와 3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의 증감률을 평가함.
 -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활용
 -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동대문구의 ‘사례관리 대상자 급여일수 증가율’은 0.04%로 분석됨.

- 사례관리 대상자는 질병, 빈곤 등을 갖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통해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므로 과다이용의 징후가 있는 수급자에게는 상담 및 계도를 통하여 적절한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표 2-59〉 사례관리 대상자 급여일수 증가율

(단위: 일, %)

지역	2006년도 사례관리 대상자 1인당 평균급여일수	2007년도 사례관리 대상자 1인당 평균급여일수	2008년도 사례관리 대상자 1인당 평균급여일수	사례관리 대상자 급여일수 증가율
전국	700.97	780.12	727.08	-0.02
대도시	722.01	817.72	756.51	-0.03
해당그룹	743.00	828.11	781.37	-0.01
동대문구	861.00	919.00	951.00	0.04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대도시는 74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사례관리 대상자 급여일수 증가율: (전년 대비 사례관리 대상자 1인당 급여일수 증가율+3년 평균 사례관리 대상자 1인당 급여일수 증가율)/2
 - 사례관리 대상자의 1인당 급여일수의 증감률을 파악함
 - 해당 시군구의 사례관리 대상자들의 1인당 당해연도와 전년도의 사례관리 대상자 1인당 급여일수와 3년간 사례관리 대상자의 급여일수 증감률을 평가함.
 - * 의료급여 텔레케어센터(11개 지역)에서는 집중관리군 대상자만 해당됨
 -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활용
 -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동대문구의 ‘의료급여 관리사 채용률’은 100%로 배치기준 2명 모두 채용함.

- 의료급여 관리사 채용은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위한 의료급여 관리사의 정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배치기준에 적절한 인원을 채용하고 있음.

〈표 2-60〉 의료급여 관리사 채용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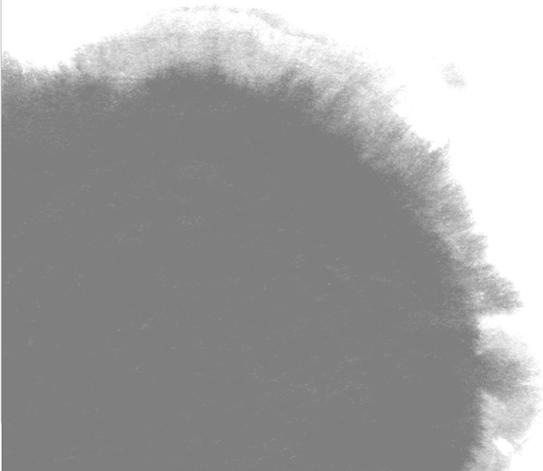
지역	채용인원	배치기준 인원	의료급여 관리사 채용률
전국	1.93	1.98	102.67
대도시	2.42	2.54	99.75
해당그룹	2.26	2.32	101.75
동대문구	2.00	2.00	100.0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대도시는 74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의료급여 관리사 채용률: (의료급여 관리사 채용인원/의료급여 관리사 배치 기준인원)×100
- 2006년도 배치기준: 전국232개 보장기관 배치완료
 - 2008년도 배치기준:
 - <텔레케어센터 미설치 시군구>
 - 수급권자 6천명 미만: 1명
 - 수급권자 6천명~15천명 미만: 2명
 - 수급권자 15천명~25천명 미만: 3명
 - 수급권자 25천명 이상: 4명
 - <텔레케어센터 설치 시군구>
 - 수급권자 2천 명당 공무원 또는 의료급여 관리사 1인을 배치
 - 2008년도 추가 배치기준: 수급권자 5천 명당 시군구에 대하여 관리사 0.5명으로 산정하여 추가 배치
-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03

복지정책 발전방안



제3장 복지정책 발전방안

제1절 전반적 방향

- 전반적으로 동대문구는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환경의 많은 제한점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복지부서 직원의 지역사회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열정이 매우 큼.
 - 그렇지만 복지재정의 확충과 시설인프라 구축은 다소 기간이 소요되므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평가 기준연도의 차이로 인하여 많은 점이 개선되었으나 자료가 충분치 않아 이미 확충 또는 개선된 점이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발전방안에 완벽히 반영되지 않는 한계를 가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제시하는 발전방안은 향후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동대문구의 복지정책 평가점수가 낮은 영역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 영역의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복지정책 평가점수가 낮은 영역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 영역의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 「노인복지」, 「아동·청소년」, 「보육」,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자활」 영역은 전국 평균 및 해당그룹 평균과 큰 차이로 낮아 많은 노력이 필요함.

-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보임.
 - 노인복지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의 성과」, 「장기요양시설 확충도」가 특히 낮아 대책이 요구됨.
 - 장애인복지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서비스는 「사회서비스사업 활용도」가 특히 낮으므로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음.

제2절 복지영역별 방안

1. 복지총괄

□ 복지총괄 종합의견

- 동대문구의 지자체 사회복지 기반확충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복지총괄 세부지표 평가의견 및 개선방안

- 인구 10,000명당 민간복지 종사자수가 적다는 것은 민간복지종사자 1인이 담당하는 인구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결과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수가 적어 민간복지 종사자가 적게 채용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또한 생활시설 종사자수는 135명으로 평가되었으나 실체는 141명으로 통계치의 오류로 판단됨.
 - 복지종사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인력들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고 적절한 역할을 부여 하는 것도 중요함.
 - 또한 복지종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함.
 - 사회복지사를 많이 고용하는 민간사회복지기관이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사회복지기관 행정정보 연계시스템 사용률에서 새울행정시스템과 정보연계시

시스템에 등록되어 사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수는 전국 및 해당그룹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 2010년 평가에는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된 사회복지 시설수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 시설별 정보화 격차 감소와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행정정보 연계시스템 사용 기관수의 확대가 시급함.
- 또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연계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함.

○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이행의 적절성의 점수가 낮은 이유는 협의체에 간사가 단 1명도 없고,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도 11월 이후에 수립되었기 때문임.

- 동대문구는 현재까지 간사가 채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풀타임 및 파트타임의 간사를 채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또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6월 이전에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대표협의체 대면회의를 통해 정식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복지 특화사업 및 민관협력사업 건수에서 특화사업 건수와 민관협력사업 건수 모두 전국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평가당시 특화사업 건수는 7건, 민관협력 건수는 0건으로 평가되었으나, 실제로는 각각 22건, 13건으로 통계가 누락된 것으로 분석됨.

-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민간자원을 개발 할 수 있는 특화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이를 위해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주민 복지수준을 꺾을 수 있는 사업 증설이 필요하며, 일회성의 행사보다는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함.
- 또한 지역복지특화사업의 개발과 추진에 보다 큰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예산 배정이 필요함.

- 민관협력건수를 높이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사업을 개발·실시할 수 있도록 구청 차원에서의 계획 수립 및 적극적 지원이 요구됨.

○ 등록자원봉사자당 평균봉사활동 시간이 타 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본 평가는 동대문구 자원봉사팀에서 실시중인 자원봉사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자원봉사자가 적게 분석되었음.
- 또한 동대문구에는 복지시설이 적어 봉사활동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자원봉사활동 등록자수와 이들의 봉사활동 총시간이 함께 증대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 증진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함.

2. 노인복지

□ 노인복지 종합의견

- 노인복지의 장기요양시설 확충도 영역은 최고점을 기록하였으나,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영역은 저조한 점수를 보임.

□ 노인복지 세부지표 평가의견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에 있어서 동대문구의 사업대상자수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률은 해당그룹보다 낮음.
 - 동대문구는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를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위기노인에 대한 집중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있어 개선여지가 높음.
 - 그러나 향후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수행에 있어서 다양한 사업의 수행의 향상을 필요로 하며, 특히 생활교육인원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함.
 - 노인의 욕구에 적합한 다양한 서비스를 충분한 시간동안 제공함으로써 내실화를 기하고 수혜노인의 만족도를 제고해야 함.
-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동대문구는 특히 민간영역 일자리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본 지표의 경우, 일자리 사업량은 서울시의 예산액에 따라 각 자치구별로 사업인원을 정해주고 있는 실정으로 자치구에서 인원을 증감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또한 동대문구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수가 전국 평균인원보다 2배 이상

-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노인일자리 제공률이 적게 나온 것으로 분석됨.
- 이를 위해 65세 이상 인구수에 비례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양을 배정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함.
- 장기요양시설의 확충은 해당 그룹의 확충률이 44.48%인 것에 비해 동대문구는 3.87%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동대문구의 시설이용대상자는 5,924명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로는 612명으로 노인요양시설 확충률은 37.42%로 분석됨.
 - 그 결과 평가당시의 확충률보다는 높게 나타났지만, 해당그룹 평균보다는 여전히 낮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2010년 노인복지의 평가지표는 장기요양시설 확충도와 기초노령연금 관리의 적절성임.
- 장기요양시설 확충도를 위해 현 노인요양시설의 공급정도를 파악하고, 부족할 경우 민간시장의 활성화, 공공시설 확충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
 - 기초노령연금 관리의 적절성을 위해 변동자료의 적기처리와 부적정 급여의 관리가 요구됨.
 - 이는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요구되어지는 항목으로서 업무담당자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아동·청소년

- 아동·청소년 종합의견
- 아동·청소년복지의 아동·청소년보호 및 활동기반의 적절성, 아동·청소년복지 서비스 활용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
- 아동·청소년 세부지표 평가의견
-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은 전국, 대도시, 해당그룹의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 유해업소수는 해당그룹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청소년 유해업

소 단속 횟수와 청소년 보호법상 적발 단속 건수는 매우 적은 수치를 나타냄.

-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단속기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며, 타부서와 합동으로 단속하여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해야 함.

-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립하고 유해업소 단속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하고, 단속이 다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청소년지원센터의 미설치 및 CYS-Net의 미시행으로 나타나, 청소년지원센터를 증설하고, 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의 구축 마련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동대문구는 시립청소년수련관에 설치하려고 검토하였으나 공간이 협소하여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 그러므로 청소년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거나 신축 건물의 경우 의무적으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사회아동 방과후 보호 비율과 아동발달 지원계좌(CDA) 저축률은 매우 낮음.

- 동대문구의 방과후 보호 아동중 국민기초생활수급 아동수는 20명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로는 지역아동센터 20명, 보육시설 85명으로 총 105명인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변경된 통계치로 산출된 지역사회아동 방과후 보호 비율도 여전히 전국 및 해당그룹의 평균보다 낮음.

- 아동발달 지원계좌(CDA) 수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후원자의 연계 등이 필요함.

- 동대문구의 경우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에 신규 정책시 신청서를 함께 수리하고 있음.

- 또한 후원관리기관에 아동발달계좌 미개설 아동에 대한 후원금을 협조하도록 안내 하는 등의 노력을 보임.

- 요보호아동 관내보호 비율 및 타 지역발생 보호아동 비율도 매우 낮게 나타남.

- 동대문구는 관내 요보호 아동 발생수와 관내시설보호, 가정보호 아동수, 타

지역 발생 보호아동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보호아동 수는 매우 적은 수치를 보임.

- 국민기초생활수급 아동수와 요보호 아동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함.
 - 특히, 소년소녀가정아동, 가정위탁아동, 아동보호시설과 시설보호 장애아동, 공동생활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어려움에 처해있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함.

4. 보육

□ 보육 종합의견

- 보육영역의 보육서비스 확대 실적은 전국 평균보다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보육 세부지표 평가의견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은 전국, 대도시, 해당그룹의 평균보다 매우 낮음.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수의 경우 동대문구는 보육시설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장 담당자와 면담결과 2007년에도 22개소, 2008년에도 22개소로 파악됨.
 - 이러한 결과는 보건복지부에서는 방과후보육시설을 민간보육시설로 분류하나, 서울시에서는 위탁을 주는 방과후보육시설의 경우 국공립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수치상의 오류로 판단됨.
 - 동대문구의 경우 향후 뉴타운 및 재개발이 완료되는 지역이 늘고 있으며, 이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임.
 -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22.07%로 전국 평균, 대도시 평균, 해당그룹 평균보다 낮음.
 - 그러나 현재 평가인증 보육시설이 68개소에서 144개소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어 점진적으로 증가될 전망으로 판단됨.
 - 더 나아가 평가 인증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기관과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5. 장애인복지

□ 장애인복지 종합의견

- 장애인복지서비스 기반 확충도,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 및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사업 성과 등 전체 평가지표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장애인복지서비스 기반 확충도와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은 전국 평균과의 격차가 현저함.

□ 장애인복지 세부지표 평가의견 및 개선방안

- 장애인복지 기반 및 복지서비스 확대 분야의 지표로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율, 장애인거주시설 설치율,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 등은 매년 평가되는 항목이라 할 수 있음.
 - 동대문구의 직업재활시설수는 1개소, 근로장애인은 0명으로 평가되었으나, 실제로는 정원수가 18명으로 파악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자립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라는 점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동대문구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1개소, 거주시설 정원은 0명으로 평가되었으나, 실제로는 정원수가 18명으로 파악됨.
 -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에도 지역사회 욕구를 반영하여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 등의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그룹홈과 단기보호시설 등 지역사회 기반의 소규모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의 경우, 장애수당(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등 현금 급여에 대한 지원 범위가 핵심 평가 지표인 점을 감안하여, 당연 지급 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외에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

계층 장애인에 대한 발굴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임.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의 경우 동대문구는 전국 평균 및 해당그룹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속적인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하되, 단순한 양적 확충이 아닌 장애인이 실제 사용하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질적인 면을 고려해야 함.
 - 동대문구의 경우 설치대상 건물수는 12,393개소, 기설치 건물수는 89개소로 평가되었으나, 실제로는 각각 12,690개소, 11,352개소로 평가됨.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사업 성과의 경우에도 복지종합 평가가 시작된 이래로 매년 지속적으로 평가되어오는 항목으로서, 실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우선구매비율 준수율이 전국 평균 및 해당 그룹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의 의지가 모아진다면 개선의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신규로 설치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근로 작업장을 설치하여 우선 구매대상 품목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한다면, ‘장애인복지 기반 및 복지서비스 확대’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사업 성과’ 지표들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함.
 - 또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구매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장애인생산품도 경쟁력이 있어야 구매 가능하므로 품질관리가 선행되어야함.

6. 지역사회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 종합의견

- 동대문구의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의 평가결과는 전국 평균 및 해당그룹내 평균보다 현저히 낮음.
 - 세부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사회서비스사업의 활용도 영역 및 사회서비스 업무추진의 적절성 영역은 전국 평균점수 대비 표준편차 이상으로 저조한데 비해,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영역은 전국 평균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함.

□ 지역사회서비스 세부지표 평가의견 및 개선방안

-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의 사업시행 건수는 전국 평균 건수 및 해당그룹내 평균 건수를 상회하고 있음.
 - 그러나 사회서비스 제공기반의 확충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평균 제공기관 수의 경우, 전국 평균은 물론 해당그룹의 평균 제공 기관수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서비스 제공기관이 2개 이상인 사업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복수의 제공기관이 기관 간의 경쟁 촉발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아울러 사회서비스 사업의 주요 정책목표인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볼 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취업지수는 해당그룹 평균은 물론 전국 평균을 크게 하회하고 있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
- 지역주민의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률이 전국 평균 및 해당그룹내 평균 보다 크게 낮음.
 - 이러한 결과는 실제 바우처 생성액은 457,790천원이었으나, 평가 당시 4,577,900천원으로 전산 입력되어 통계치의 오류로 보여짐.
 - 사회서비스 사업 추진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예산 집행률의 경우, 해당그룹내 평균 집행률보다는 다소 낮지만 전국 평균 집행을 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
 - 그러나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액의 실적이 전국 평균은 물론 해당그룹 평균 실적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동대문구의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의 평가결과를 종합해 보면, 지역사회 주민의 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기에는 전반적인 사업 추진이 소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회서비스 영역은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반을 확충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다차원적인 정책목표를 추구하고 있음.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며,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하고, 서비스 수요 확대에 따라 보다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
- 특히, 제공기반 확충을 위해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보하고, 이들 간의 경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구도를 형성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육성이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시급한 현안 과제로 대두됨.
-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저숙련, 중고령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노동시장 진입을 수월하게 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전략적 사업영역임을 주지해야 할 것임.

7.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종합의견

- 동대문구의 기초생활보장 영역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업무기반 확충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고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분야는 전국 평균보다 높고 모니터링 참여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기초생활보장 세부지표 평가의견

- 기초생활보장 영역 중 동대문구 평가점수가 낮게 나온 분야인 모니터링 참여 실적은 지자체 자체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분야임.
 - 모니터링에 대한 참여는 중앙부처(보건복지부)와의 적극적 연계를 통해 참여가 가능한 사업이라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중앙부처 사업에 대한 참여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
- 긴급지원 활성화 시행실적에서는 의료지원을 제외한 타 지원 연계실적이 다소

낮아 평가점수가 낮게 나타남.

－ 전체 긴급지원 결정건수에 비해 타 지원 연계실적이 적은 것이므로 긴급복지대상자들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등을 통해 다른 지원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기초보장 영역의 신규수급자 발굴, 급여조정, 긴급지원 활성화 지표는 매년 평가되는 항목이라 할 수 있음.

－ 동대문구의 경우 복지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위의 지표들에 대한 평가는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간부들의 관심과 복지공무원 더불어 지역 통·반장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단 긴급지원 결정 후 연계사업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8. 자활

□ 자활 종합의견

○ 동대문구의 자활영역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수급자의 취업·창업률에 대한 실적은 없으며, 다른 평가지표에 대한 점수도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자활영역 세부지표 평가의견 및 개선방안

○ 자활영역의 경우 동대문구가 서울시에 위치하고 인프라여건이 중소도시 및 군지역에 비해 좋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활사업 활성화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자활영역의 세 가지 평가항목 전부에서 실적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의 적극적 노력과 지역자활센터 등과의 협조를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동대문구의 경우 현재의 자활사업 실적을 통해 살펴보면 향후 평가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할 수 있음.

- 자활사업 참여자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은 상황에서 적극적 시장진입형 사업, 취업·창업률, 탈수급률이 낮은 것은 수급자들 역시 자활사업에 힘써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음.
 - 따라서 지역자활센터 혹은 관련 복지단체들과 협력하여 수급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탈수급 의지를 고취할 수 있는 적극적 개입프로그램과 수급자들에 대한 사례관리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지자체 간부들의 자활사업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기초로 공무원, 지역 복지단체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주기적인 워크숍 혹은 만남을 통해 자활사업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탈수급·탈빈곤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민간에서 자활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와 직원들에 대한 지원도 함께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9. 의료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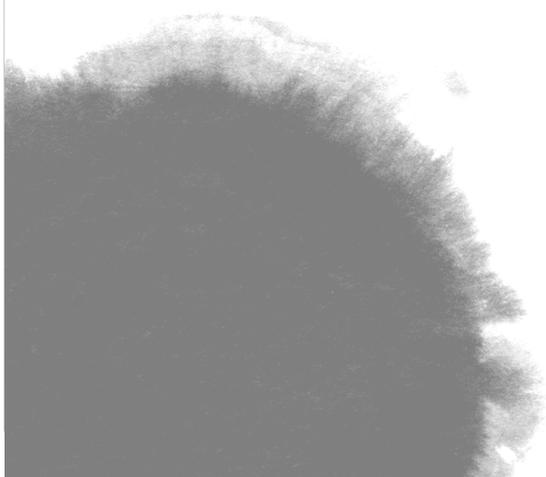
□ 의료급여 영역 개선방안

- 자격관리 신속처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격변동이 접수되면 가능한 빨리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함.
 - 자격처리 신속도는 다음과 같은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자격변경 신고와 관련하여 시·군·구에 신고를 늦게 하거나 전산 상에 자격오류가 발생할 경우.
 -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요양비용을 지급할 때 수급권자 자격이 확인되지 않아 지급보류가 되는 경우.
 -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신고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해당자가 건강보험 자격 취득에 문제가 발생.
 - 회수되지 않은 의료급여증으로 진료를 받았을 경우 건강보험과 비용 상계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수급권자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보험건강보험공단 자격변경을 신

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함.

- 수급권자 평균 입내원일수와 진료비 증가율은 의료급여 재정안정 차원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진료비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
 - 지자체 단위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하지만 365일 이상 진료자에 대한 관리, 선택병의원대상자 관리, 본인부담제도 관리 및 철저한 자격 관리 등으로 진료비나 입내원일수를 줄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지자체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진료비 증가요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의료비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
- 사례관리 대상자 급여일수 증가율은 의료이용량이 많은 대상자들에게 집중적인 상담이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급여일수를 경감시키려는 노력에 대한 것임.
 - 사례관리 대상자들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에 따라 의료이용량이 줄어들면 본 지표이외에 수급권자 진료비도 경감되는 효과가 있어, 이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함.
- 의료급여 관리사 채용률은 보건복지부가 사례관리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의료급여 관리사들을 더 많이 충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였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른 의료급여 관리사 인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들이 사례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여야 할 것임.

부 록



부록

[부록 1] 컨설팅을 위한 현지회의 간담회





